인권정보자료실
Ic1.2.4

'95 여성관계자료 301-3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 · 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لمؤتمر العالمي الرابع المعني
بالمرأة

第四次
妇女问题世界会议

QUATRIÈME
CONFÉRENCE MONDIALE
SUR LES FEMMES

CUARTA
CONFERENCIA MUNDIAL
SOBRE LA MUJER

ЧЕТВЕРТАЯ ВСЕМИР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ПОЛОЖЕНИЮ
ЖЕНЩИН

'95 여성관계자료 301-3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북경선언 · 행동강령

한국여성개발원

인권정보자료실
Ic1.2.4

'95 여성관계자료 301-3

제4차 세계여성회의

북경선언 · 행동강령

과제담당자 : 정 순 영
강 선 혜
김 영 혜
서 미 석
주 영 미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1945년 창설된 직후부터 유엔은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하여 여성문제 전담기구를 설립하였고, 법 아래 여성의 평등을 추구하는데 주력하였으며, 3차에 걸쳐 세계여성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성평등, 발전에의 여성통합과 평화증진을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시켰습니다.

멕시코(1975), 코펜하겐(1980)에 이어 1985년 나이로바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발전계획과 수행과정에 여성의 통합을 목표로 하는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동 전략의 이행상황을 중간점검하고 평가하며,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원인의 분석을 통하여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본원은 국내의 관련 정부부처, 여성단체, 학자들이 여성발전을 향한 행동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강령을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서가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국제협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1995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 세 화

북경선언

1. 우리,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정부들은,

2. 유엔 창립 50주년을 맞는 1995년 9월 여기 북경에 모여,

3.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전 세계의 모든 여성을 위한 평등, 발전, 평화의 목적을 증진시키기로 결정하고,

4. 전 세계 모든 여성의 목소리를 인정하며 여성과 그들의 역할 및 환경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한편, 앞서 길을 닦아 놓은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세계의 청소년에 존재하는 희망에 의해 고취되며,

5. 여성의 지위가 지난 10년간 다소 중요한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았으나 그 진행이 고르지 못하였으며, 남녀간의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주요 장애요인은 만인의 행복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6. 또한 이러한 상황이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내적인 또는 국제적인 영역 모두에서 연유하는 빈곤에 의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며,

7. 이러한 압박과 장애요인들을 표명하고, 그리하여 전 세계 여성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함에 있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이는 현재에 그리고 우리를 차세기로 이끌고 가기 위해 결단, 희망, 협력 및 결속의 정신에 입각한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는 다음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8. 유엔헌장에 천명된 남녀 평등권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및 기타 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인권문서, 여성에대한 폭력철폐선언과 발전에 관한 권리뿐 아니라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을 재확인한다.

9.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모든 인권의 한 부분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

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도모한다.

10. 앞서 평등, 발전, 평화의 달성을 목표로 열렸던 유엔회의들과 정상회의들 - 1985년 나이로비의 여성에 관한, 1990년 뉴욕의 아동에 관한, 1992년 리우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1993년 비엔나의 인권에 관한, 1994년 카이로의 인구와 개발에 관한, 그리고 1995년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에 관한 회의들에서 도달했던 합의와 진전을 재확인한다.

11.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이행을 이룩한다.

12.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그리하여 개인적으로나 사회공동체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며,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그들의 욕구에 따라 그들의 삶을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는 다음을 확신한다:

13.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힘의 증진과 완전한 참여는, 의사결정과정과 권력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는데 주요하다.

14.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15. 평등권, 자원에 대한 기회와 접근, 남녀에 의한 가족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그들 사이의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는 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복과 그들 가족의 행복에 필수적이다.

16. 지속적인 경제성장, 사회개발, 환경보호 및 사회정의에 근거한 빈곤의 근절은 경제, 사회개발 및 기회 균등에 여성의 개입과 인간 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남녀 공히 수혜자와 시혜자로서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

17. 모든 여성들이 그들 건강의 모든 측면, 특히 출산을 조정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재확인은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데 근본적인 것이다.

18. 지방,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평화는 성취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차원의 리더십, 분쟁해결 및 영속적인 평화 증진에 원동력인 여성의 발전과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

19. 여성의 완전한 참여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차원에서 여성의 힘의 증진

과 발전을 촉진할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성인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행하며, 모니터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20. 그들의 자율성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의 모든 활동주체들, 특히 여성그룹 및 네트워크, 기타 비정부기구들 및 지역사회단체들의 참여와 기여는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이행과 조치에 중요하다.

21. 행동강령의 이행은 정부와 국제사회로 부터의 공약을 필요로 한다. 회의 중에 취한 공약을 포함하여, 행동을 위한 국가·국제적인 공약을 하므로써 정부와 국제사회는 여성의 힘의 증진과 발전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를 택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다음을 결정한다:

22. 금세기 말까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행동을 증대한다.

23. 여성과 여아에 의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4.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의 발전 및 힘의 증진을 가로 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25. 평등을 향한 모든 조치들에 남성이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26. 고용을 포함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증진하고, 경제구조변화를 통하여 빈곤의 구조적 요인들을 표명하고, 농촌지역 여성을 포함한 모든 여성이 생산적인 자원, 기회와 공공서비스에 중대한 발전주체로서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이고 늘어나는 부담을 근절한다.

27. 기초교육의 제공, 평생교육, 문해와 훈련, 소녀와 여성을 위한 일차보건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포함한 인간 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한다.

28. 여성발전에 평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진일보하고, 평화운동에 여성이 벌여온 선도적인 역할을 인식하면서 엄격하고 유효한 국제통제하에 있는 지역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무장해제를 향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든 상황에서 핵무장해제와 핵무기확산금지에 기여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자적이며, 효과적으로 확인가능한 포괄적인 핵실험금지 조약의 결론에 대한 협상을 지지한다.

29.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한다.

30. 교육과 보건의료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과 대우를 도모하고 교육뿐 아니라 여성의 성 · 재생산 관련 건강을 증진한다.

31. 여성과 소녀의 모든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32. 인종, 연령, 언어, 종족, 문화, 종교와 장애로 인하여 혹은 그들이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힘의 증진이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다수의 장애에 직면하는 모든 여성과 소녀를 위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동등한 향유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강화한다.

33. 여성과 특히 소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도주의적인 법률을 포함한 국제법의 존중을 도모한다.

34. 모든 연령층의 소녀와 여성의 전면적인 잠재력을 개발하고, 만인을 위하여 더 좋은 세상을 이룩하는데 그들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며, 발전과정에 그들의 역할을 강화한다.

우리는 다음을 결정한다:

35. 자원에의 동등한 접근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특히 국제협력에 의하여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과 소녀의 발전과 힘의 증진에 진일보하는 방법으로 토지, 신용, 과학과 기술, 직업훈련, 정보, 대중매체와 시장을 포함한 경제적인 자원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한다.

36. 정부측, 국제기구 및 모든 차원의 기관들로부터의 강력한 공약을 필요로 하는 행동강령의 성공을 도모한다. 우리는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가능한 개발의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인 요소임을 깊이 확신하며, 이는 만인을 위해 더 높은 삶의 질을 이룩하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위한 기틀이다. 빈곤층 특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이 환경적인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증진시켜야 함을 인지하는 공정한 사회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초석이다. 우리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기반을 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행동강령의 성공은 또한 모든 가능한 자금기제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새롭고 추가된 자원뿐 아니라 국가 및 국제수준의 자원의 적절한 동원을 필요로 한다. 자금기제는 여성발전을 위한 다자, 양자 및 사적 자원;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자원; 평등권,

평등한 책임과 평등한 기회에 대한 공약 및 국가 · 지역 · 국제기구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에 대한 공약; 세계의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제의 설립과 강화등을 포함한다.

37. 지속적인 국제협력과 지원을 필요로하는 경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의 행동강령에 대한 성공 또한 도모한다.

38. 우리는 우리자신이 정부로서 성관점이 우리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되도록 도모하면서 다음의 행동강령을 이행할 것을 가결하며 공약한다. 우리는 유엔체제, 지역 · 국제재정기관, 기타 관련 지역 · 국제기관과 비정부기구뿐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이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모든 부문과 본 행동강령 이행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기여하도록 촉구한다.

목 차

북경선언

행동강령

	조항	페이지
Ⅰ. 임무의 기술	1 - 5	9
Ⅱ. 세계적 구도	6 - 40	11
Ⅲ. 주요관심분야	41 - 44	19
Ⅳ. 전략목표와 행동	45 -285	21
A. 여성과 빈곤	47 - 68	21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69 - 88	30
C. 여성과 건강	89 -111	39
D. 여성에 대한 폭력	112-130	55
E. 여성과 무력분쟁	131-149	64
F. 여성과 경제	150-180	75
G. 권력 및 의사결정과 여성	181-195	89
H. 여성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96-209	95
I. 여성의 인권	210-233	101
J. 여성과 미디어	234-245	111
K. 여성과 환경	246-258	116
L. 여 아	259-285	123
Ⅴ. 제도적 조치	288-344	134
A. 국가차원	293-300	135
B. 소지역/지역차원	301-305	136
C. 국제차원	306-344	137

	조항	페이지
Ⅵ. 재정적 조치	345-361	145
A. 국가차원	346-350	145
B. 지역차원	351-352	146
C. 국제차원	353-361	146

주(註)

부 록: 북경선언 · 행동강령 영문원본

행동강령

Ⅰ. 임무의 기술

1. 행동강령은 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제이다. 이는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전략 1/의 이행을 촉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결정에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통하여 사적, 공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둔다. 강령은 또한 가정, 직장, 그리고 더 넓게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여성과 남성간의 분배된 세력과 책임의 원칙을 수립하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은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정의를 위한 조건이고,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해 필요하고 기본적인 선행조건이다.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에 기초한 변혁된 동반자 관계는 인간 중심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건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공약은 차세기의 도전에 부응하여 여성과 남성이 그들 자신, 그들의 자녀 및 사회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2. 행동강령은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되었던 비엔나선언2/과 행동계획에 명시된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한다. 행동을 위한 의제로써 본 강령은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와, 모든 여성의 생애를 통한 기본적인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추구한다.

3. 행동강령은 전 세계적인 양성평등의 공동목표를 향하여 여성이 남성과 함께 동반자로 일하므로써 만이 제기될 수 있는 공동 관심사를 나눌 것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이 처해 있는 위치와 여건의 전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떤 여성들은 그들의 힘을 증진시키는데 독특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4. 행동강령은 모든 연령의 또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위한 평등의 원칙을 포함하여, 완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바탕을 둔 평화롭고, 공정하고, 인도적인 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만인에 의한 즉각적이고 협조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이를 위하여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맥락에서 폭넓게 기반을 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사회개발과 사회정의를 유지시키기 위

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5. 행동강령의 성공은 정부, 국제기구 및 모든 차원의 기구의 강력한 공약을 필요로 한다. 이는 또한 여성발전을 위한 다자, 양자 및 사적인 자원; 국가, 소지역, 지역 및 국제기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재정자원; 평등한 권리, 평등한 책임, 평등한 기회와 모든 국가·지역·국제기구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 그리고 세계여성에 대한 책임을 위한 모든 차원의 기구 설립 및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재정기구로 부터 개발도상국에게 새롭고 추가적인 자원뿐 아니라 국가·국제 차원의 적절한 동원을 필요로 한다.

Ⅱ. 세계적 구도

6. 제4차 세계여성회의가 세계가 새로운 천년의 초입에 서 있는 이때 열리고 있다.

7. 행동강령은 경제사회이사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관련있는 결의들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협약3/을 지지하며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신뢰한다. 행동강령의 공식화는 향후 5년간 수행되어야 할 우선적인 조치들의 기본적인 그룹을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8. 행동강령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그러한 목적에 입각한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계획과 공약을 나열하고 있는 세계아동정상회의, 유엔환경개발회의, 세계인권회의, 국제인구개발회의 및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도달한 합의 사항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마찬가지로, 소도서 국가의 지속개발회의, 국제영양회의,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국제회의 및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회의는 모두 그들의 특정범위내에서 여성과 소녀의 역할에 주요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발전과 인권의 다양한 면을 천명하였다. 그밖에, 세계토착민의 해4/, 세계가정의 해5/, 유엔관용의 해6/, 농촌여성을 위한 제네바선언7/ 및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8/ 등도 여성의 힘의 증진과 평등문제를 강조하였다.

9. 행동강령의 목표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국제법의 원칙과 완전 일치하는, 모든 여성의 힘의 증진이다. 모든 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은 여성의 힘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국가, 지역의 특성과 다양한 역사·문화·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은 명확히 인지되어야 하는 반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9/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체제와 관계없는 국가의 의무이다. 행동강령의 이행은 국내법과 전략 및 정책, 프로그램과 발전우선순위의 입안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와 상응하는 각 국가의 최상의 책임이며 다양한 종교 윤리적 가치, 문화적 배경 및 개인과 그들 지역의 철학적인 신념은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성들이 그들의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10.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되었던 유엔여성 10년: 평등, 발전, 평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세계회의와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채택 이후 세계는 상당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변화를 경험해 왔으며 이는 여성에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세계인권회의는 여성과 여아의 인권이 양도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불가분한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였다. 국가,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정치적, 시민

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에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제사회의 우선목표이다. 세계인권회의는 유엔헌장과 기타 인권관련 문서 및 국제법에 일치하는 만인을 위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 관찰 및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국가의 엄숙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인 본질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11. 냉전의 종식은 국제적인 변화를 초래했으며 강대국간의 경쟁을 감소시켰다. 세계적인 무력분쟁의 위협도 감소되었고 국제관계는 향상되었으며 국가간의 평화 전망도 증가되었다. 비록 전 세계적인 분쟁에 대한 위협은 감소되었으나 침략전쟁, 무력분쟁, 식민지나 다른 형태의 외국인통치 및 외국인 점령, 내란, 테러행위 및 극단적 폭력은 지구상의 많은 부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다. 여성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 특히 무력분쟁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히 인종청소 정책하의 살인, 고문, 조직적 강간, 강제임신과 강제유산을 포함한다.

12. 세계 · 지역 · 지방차원의 평화와 안보의 유지는, 침략정책과 인종청소 정책의 방지 및 무력분쟁의 해결과 함께, 여성과 여아들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들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13. 세계적인 군비와 무기통상 및 거래, 무기생산 및 구입을 위한 투자를 포함한 과도한 군비는 사회발전을 위한 가능한 자원을 감소시켜왔다. 부채부담과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의 결과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구조조정 정책을 택하여 왔다. 더구나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불완전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어 사회발전에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국가들이 있다. 빈곤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지난 20년동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특히 무거운 부채를 지고 있는 나라에 불균형하게 증가되어 왔다.

14.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의 사회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비록 사회개발에 필요하더라도 가속된 경제성장은 그 자체가 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주변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의 모든 양상에 전체적인 접근을 기반으로하는 경제성장으로 부터 사회구성원의 이득을 보증하는 새로운 대안을 위한 추구가 절대 필요하다.

15. 민주화를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인 과정을 개방해 놓았으나 특히 정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남성과 완전하고 평등한 동반자로서의 여성의 일반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아프리카의 제도적인 인종주의 정책—인종차별정책—은 분해되었으며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권력이양이 일어났다. 중 · 동유럽에서는 국회민주주의로

의 전향이 급속히 일어났으며 각국의 특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험들이 생겨났다. 전환이 대개는 평화적이었지만 어떤 국가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 무력분쟁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16. 몇몇 지역에서의 정치적 불안정과 만연해 있는 경기침체는 많은 나라의 발전목표를 좌절시켜 놓았다. 이는 말할 수 없는 빈곤의 확대를 가져왔다. 10억이 넘는 극빈자들 중에는 여성이 절대다수이다. 모든 부문에 있어 변화와 조정의 빠른 진전은,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며,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또한 증가시켰다. 많은 경우에 구조조정계획은 그것이 취약집단이나 비혜택집단 혹은 여성에게 안겨줄 부정적인 효과를 극소화하도록 세워진 것이 아니며 그들 집단을 경제 · 사회적 활동의 주변화로부터 예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도록 세워진 것도 아니었다. 다자무역협상의 우루과이라운드(UR)10/ 최종법은 무역자유화나 개방된 역동적 시장에의 접근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는 막대한 군비지출이 있었다. 몇 나라에 의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최근 감소되었다.

17. 절대빈곤과 빈곤의 여성화, 실업, 증가되는 환경의 파괴, 계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권력과 통치제도로부터 인류의 반인 여성을 만연되게 제외시키는 것 등은 발전, 평화 및 안전의 지속적인 추구와 인간중심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해결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인류의 반인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은 그러한 추구의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동반자적 정신에 기반을 둔 각국 정부와 사람들간의 국제협력, 공평하고 국제적인 사회, 경제, 환경 및 남녀간의 완전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로의 급진적인 변혁의 새로운 시대만이 이 세계를 다음 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18. 최근의 국제경제개발은 많은 경우에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비록 장기적으로는 유익할지라도 외채, 구조조정계획과 조치의 큰 부담을 안아 왔던 국가들이 사회비용을 삭감하게 되었고 그것이 특히 아프리카와 불행하게도 최저개발국의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사회봉사를 위한 책임이 국가에서 여성에게로 전가되면서 악화되었다.

19. 경기가 전환되고 있는 국가들에서 진행중인 재구조뿐 아니라 많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있어 경기 침체는, 여성의 고용에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여성들은 종종 보호되지 않은 가내생산이나 비고용된 일을 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직업 보장이 결여되었거나 그들을 위험한 작업조건으로 말아 넣는 고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의 가구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낮은 보수와 낮은가치의 일거리를 찾아 고용시장에

진입한다. 또 다른 여성들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이주하기로 결심하게 된다. 다른 어떤 책임의 감소도 없이 이것은 여성의 일의 전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놓은 것이다.

20. 거시 및 미시경제정책과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을 포함하여, 항상 특별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짜여지지는 않았다. 빈곤은 절대·상대적 양쪽으로 증가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곤여성의 수가 증가하였다. 도시빈민 여성의 수도 많다; 그러나 농촌과 외딴지역 여성의 곤경은 그러한 지역발전의 침체를 감안하여서 특별한 주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비록 국가의 지표가 향상을 보이고 있더라도, 농촌여성의 대부분은 경제적 저개발이나 사회주변화의 조건하에 삶을 계속하고 있다.

21. 여성은 경제와 보수·무보수의 가내, 지역, 직장에서의 일을 통한 빈곤과의 투쟁에 핵심적인 기여자이다. 증가하는 여성의 수가 유급 고용을 통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워 왔다.

22. 전세계적으로 1/4의 세대가 여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세대들도 남성이 있음에도 여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성에 의해 유지되는 세대는 임금차별, 고용시장에서의 직업적인 차별 또는 다른 성에 근거한 장애로 인하여 종종 가장 가난한 집단사이에 있다. 가족분산, 도시와 농촌지역 사이의 국내인구이동, 국제이주, 전쟁과 국내 난민들이 여성세대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3. 평화와 안전의 달성과 유지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전제조건임을 인식하면서 여성은 평화를 위한 운동에 다양한 역량을 가진 핵심주체로 점점 더 자신들을 확보하고 있다. 의사결정, 분쟁방지와 해결 그리고 모든 다른 평화 주도에 여성의 완전한 참여는 영원한 평화실현에 필수적이다.

24. 종교, 영적특성 및 신념은 수백만의 남녀의 생활방식이나 미래에 대한 그들의 열망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사고, 양심 및 종교에 대한 자유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며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적으로나 타인과 함께 지역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종교나 믿음을 갖거나, 받아들이는 자유 그리고 숭상하고, 엄수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데 있어 그들의 종교나 믿음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평등, 발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전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종교, 사고, 양심 및 믿음은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윤리적 및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에서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시키는데 기여할지도 모르고 또한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극단주의는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폭력과 차별로 유인될

수 있음은 확인되었다.

25. 제4차 세계여성회의는 유엔총회에 의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되었고 1975년에 시작되었던 진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1975년은 여성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킨 전환점이었다. 유엔여성 10년(1976~1985)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진단하고 여성을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에 포함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이었다. 1979년 유엔총회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였고 이는 198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남녀간의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국제수준에서 설정하였다. 1985년 유엔여성 10년: 평등·발전·평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세계회의에서는 2000년까지 수행될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을 채택하였다. 남녀간의 평등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진전이 있어왔다. 많은 정부가 남녀간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고 사회전반에 여성 시각의 주류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기구를 설립하였다. 국제기구들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여 왔다.

26. 비정부 부문, 특히 여성단체들과 여권주의자 그룹들의 증가하는 세력은 변화를 위한 추진력이 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은 여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법과 기구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지지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또한 발전을 향한 새로운 접근를 위한 촉매자가 되었다. 많은 정부는 비정부 기구들이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과 진전을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여야 할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나라에서 정부는 비정부기구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계속 제한하고 있다. 여성은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지역사회, 국가, 지역 및 세계적인 토론과 국제적인 논쟁에 참여하고 강하게 영향을 미쳐왔다.

27. 1975년 이후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었고 이는 남녀간의 평등 증진에 목적을 둔 행동을 진행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교육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유급 노동력에의 여성의 참여가 대단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남녀간의 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왔다. 생산과 재생산 역할간 성별 노동분업의 경계는 여성이 예전에는 남성에 의해 주도되던 일에 진입하기 시작하고 남성이 탁아를 포함한 가사의 많은 책임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없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역할변화가 남성의 역할변화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일어났다.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도 여성과 남성간의 성취와 활동의 차이는 불변의 생물학적 차이라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성역할의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8. 더구나 나이로비회의 10년후에도 남녀간의 평등은 달성되지 않고 있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전세계적으로 모든 선출된 입법인의 10%만을 대표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국제적인 행정조직에의 참여가 불충분한 채로 남아있다. 유엔도 예외가 아니다. 창설 50년후에도 유

엔은 사무국과 전문기구 안에서 의사결정수준에 여성을 불충분하게 참여시킴으로써 여성 지도력의 혜택을 계속 부정하고 있다.

29. 여성은 가족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이며 따라서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은 포괄적인 보호와 협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른 문화·정치·사회적인 제도에서는 다른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의 권리, 능력 및 책임은 존중되어야만 한다. 여성은 가족의 복지와 사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의 전적인 중요성이 인식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생리적 모성, 사회적 모성과 가족과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 남녀와 사회전체의 분담된 책임을 필요로 한다. 생리적 모성, 사회적 모성, 부모 되기 및 출산에 있어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제한해서도 아니된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이 그들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인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30.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매년 8,600만에 가까운 현재의 세계인구증가는 절대 수에 있어서 사상 최고의 기록이다. 또 다른 두개의 중요한 인구 추이는 부양가족의 비율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인구의 45~50%가 15세 미만인 반면 산업국가에서는 노인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유엔의 추산에 의하면, 2025년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72%가 개발도상국에 살게 되고 이중 절반이상이 여성일 것이라는 것이다. 자녀, 환자 및 노인을 돌보는 일은 남녀간의 유급·무급직에서의 평등성 결여와 불균형한 분배로 인하여 여성에게로 불균형되게 떨어지는 책임이다.

31. 많은 여성들은 성문제 외에도 다양한 다른 요소들로 인한 독특한 장애에 부딪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종종 여성을 고립시키거나 주변화시킨다. 여성들은 특히 그들의 인권을 부인당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고용, 주택공급과 경제적인 자립에의 접근이 결여되거나 부정당하게 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된 여성들은 종종 주류에서 그들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당한다.

32. 지난 20년은 정체성, 문화적 전통 및 사회조직의 형태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보강하는 토착민 여성의 독특한 흥미와 관심사에 대한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토착민 여성은 종종 여성으로서 또한 토착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장애에 부딪치고 있다.

33. 지난 20년간 세계는 통신분야의 폭발을 목격해 왔다. 컴퓨터 기술과 인공위성, 케이블

TV, 정보의 세계적인 접근은 통신과 대중매체에 여성의 참여와 여성에 대한 정보보급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면서 계속 증가되고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세계적인 통신망이 협의의 상업적이고 소비적인 목적을 위하여 정형화되고 품위를 떨어뜨리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급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예술을 포함하여 여성이 통신과 매체기술과 의사결정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할 때까지 여성은 계속 잘못 묘사될 것이고 여성의 삶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매체는 여성과 남성을 비정형적이고, 다양하고, 균형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므로서 여성발전, 남녀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단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34. 모든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계속되는 환경파괴는 종종 여성에게 더욱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여성의 건강과 생계는 오염과 유독성폐기물, 대규모의 삼림벌채, 사막화, 가뭄, 토양과 연안 및 해양자원의 고갈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 사이의 사망조차 보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집단은 그들의 생계와 일상생활을 지속가능한 환경체계에 직접 의존하고 있는 농촌여성과 토착민 여성이다.

35. 빈곤과 환경파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빈곤이 어떤 종류의 환경적인 곤란에서 기인하는 반면에 계속되는 세계적 환경악화의 주요원인은 특히 산업국가에서의 소비와 생산의 비지속적인 형태이며 이것이 심각한 관건이고 빈곤과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36. 세계적인 추세는 가족생존전략과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모든 지역에서 상당히 증가했다. 세계적인 도시인구는 2000년에는 총 인구의 47%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인다. 추산해서 1억 2천 5백만명이 이주자, 피난민 및 난민이며 이중 절반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대이동은 가족구조와 안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많은 경우의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포함하여 남녀에게 평등하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37. 세계보건기구(WHO)의 추산에 의하면, 1995년 초에는 누적된 AIDS환자의 수가 450만 이었다. 추산해서 1,950만명의 남성, 여성 및 아동이 초진을 받은 후 HIV에 감염되었으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다른 2천만명이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우들 중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배가량 더 많이 감염될 것 같다. AIDS 유행병의 초기단계에서는 여성이 다수 감염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8백만의 여성이 감염되어 있다. 젊은 여성과 청소년들은 특히 취약하다. 2000년에는 1300만이 넘는 여성들이 감염되고 4백만 여성들은 AIDS와 관련된 상태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대략 2억 5천만의 새로운 성병

(STDs)사례가 매년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STD/HIV/AIDS 감염률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성과 소녀 사이에서 놀랄만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38. 1975년 이후 여성의 지위와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정보가 생겨났다. 전 삶의 주기를 통해서 여성의 일상적인 존재와 장기적인 열망은 차별적인 태도와 불공평한 사회·경제적 구조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참여를 가로막는 자원의 부족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태아성감별실시 및 아주 어린 소녀들의 높은 사망률과 소년과 비교할때 소녀들의 낮은 취학률은 남아선호가 식량, 교육, 건강관리 및 생명자체에 조차도 여아들의 접근을 봉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39. 오늘의 여아는 내일의 여성이다. 여아의 기술과, 사고와, 원동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완전하게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여아가 그녀의 완전한 잠재성을 개발하기 위하여는 그녀의 영적, 지적 및 생존을 위한 물적요구, 보호 및 개발이 충족되고 그녀의 평등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될 필요가 있다. 만일 여성이 삶과 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남성과 평등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이 여아의 인간적인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편적인 비준이 강력히 촉구되었던 아동권리협약11/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포함하여, 그녀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도모할 때이다. 아직도 소녀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삶의 가장 이른 단계에서 시작되고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도 줄어들지 않는 전 세계적인 증거가 있다. 소녀들은 종종 소년들보다 영양, 신체 및 정신적인 건강관리와 교육에의 접근이 덜 되고 있고 유년기와 청소녀기의 권리, 기회, 혜택을 덜 향유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다양한 형태의 성적.경제적 착취, 어린이 성편집성, 강제매춘, 신체기관과 조직의 매매, 여영아살해나 태아성감별과 같은 폭력과 해로운 관례, 근친상간, 여성생식기 절단 및 아동혼인을 포함한 조혼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40. 세계인구의 절반이상은 25세 미만이며 세계청소년의 대부분이—85%이상—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인구 통계적인 함축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젊은 여성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리더쉽의 모든 차원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갖도록 하는 특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신세대의 남녀가 더욱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무하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제사회를 위하여 중요하다. 지도자들의 새로운 세대는 모든 아동이 불공정, 억압과 불평등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이 그들의 잠재성을 개발할 수 있는 세계를 받아들이고 증진해야만 한다. 남녀 평등의 원칙은 따라서 사회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구성요소이어야 하는 것이다.

Ⅲ. 주요관심분야

41. 여성발전과 남녀평등의 달성은 인권의 문제이고, 사회정의를 위한 조건이며 여성의 문제로 분리하여 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지속적이고, 공정하며 개발된 사회를 이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성의 힘의 증진과 남녀간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적인 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행조건이다.

42.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에 명시된 대부분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와 전 세계 여성과 남성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힘의 증진에 대한 장애는 아직도 남아있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생태적인 위기가 세계의 많은 부분에 존속하고 있다. 이중에는 침략전쟁, 무력분쟁, 식민지나 다른 형태의 외국인 통치 혹은 외국인 점령, 내란 및 테러리즘이 포함된다. 제도적 혹은 실질적 차별, 여성과 소녀에 대하여 뿌리깊히 박혀있는 편견적인 태도를 포함한 모든 여성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그리고 그들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침해와 보호의 실패와 합쳐진 이러한 상황들이 1985년 유엔여성 10년: 평등·발전·평화의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세계회의 이후 직면한 여러가지 장애들이다.

43. 나이로비회의 이후의 진전에 대한 점검은 특별 관심사—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들로 부각된 특별히 긴급한 분야들을 두드러지게 한다. 모든 주체들은 반드시 상호연관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주요관심분야와 결부되어 있는 전략목표에 대한 행동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들은 모든 관심분야들에 대한 책임기제들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44. 이를 위하여 정부, 비정부기구와 사적 부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는 다음의 주요 관심 분야에 전략적인 행동을 취할것이 요청된다.

—여성에게 지속적이며 가중되는 빈곤의 부담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 그리고 불평등한 접근
—보건의료와 관련서비스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 그리고 불평등한 접근
—여성에 대한 폭력
—외국인 점령하에 살고 있는 여성을 포함한 무력 및 다른형태의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여향

—경제구조와 정책, 모든 형태의 생산적 활동 및 자원에의 접근에 있어서 불평 등
—권력분배와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수준에 있어서 남녀간의 불평등
—여성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차원의 기제 미흡
—여성의 인권에 대한 존중결여와 부적절한 증진 및 보호
—모든 커뮤니케이션 체계, 특히 미디어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형화와 여성의 접근 및 참여의 불평등
—천연자원의 관리와 환경보호에 있어서 성불평등
—여아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침해

Ⅳ. 전략목표와 행동

45. 각 주요관심 분야에 있어, 문제는 진단되었고 전략목표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주체에 의해 취해질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되었다. 전략 목표는 여성발전을 위한 나이로비 미래전략의 목표인 평등, 발전, 평화의 경계를 넘어 이에 도달하고 상호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해 채택된 주요관심분야와 특별행동에서 파생되었다. 목표와 행동은 높은 우선순위와 상호보강으로 연결되어 있다. 행동강령은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특별관심이 주어져야 하는 반면, 예외없이 모든 여성, 즉 유사한 장애물에 종종 직면하는 여성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46. 행동 강령은 여성이 인종, 연령, 언어, 민족성, 문화, 종교 또는 장애, 토착민 여성이기 때문에 혹은 기타 지위 때문에 완전한 평등 및 향상에 대한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여성들은 가족지위, 특히 편부모로써의 지위 및 농촌, 외딴지역 혹은 가난한 지역의 생활수준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연관된 특별장애물에 봉착한다. 이민여성과 이주여성뿐 만 아니라 국내난민여성을 포함한 피난민여성과 기타 난민여성에게도 추가적 방해물이 존재한다. 많은 여성 또한 환경적 재해, 심각하며 전염성 질병 및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에 폭력에 의해 특히 영향을 받는다.

A. 여성과 빈곤

47. 현재 지구상에는 10억이상의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운 빈곤 상황하에서 살고 있으며,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며 대다수는 여성이다. 빈곤은 구조적 원인을 포함한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빈곤은 국내·국제적 영역 양쪽에 원인을 둔 복잡하고 다양역적 문제이다. 세계경제의 세계화와 국가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은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위험부담 및 불확실성은 물론 지속된 경제성장과 개발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불확실한 세계의 경제풍토는 특정 몇몇 국가에서는 지속적이며 다루기 힘든 외채 및 구조 조정 프로그램뿐 아니라 경제적 재구조화를 수반해왔다. 첨가하면, 모든 종류의 갈등, 인간배제, 환경파괴는 국민의 기본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훼손시켜왔다. 세계경제의 변화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사회개발의 요소들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의 중요한 경향은 지역에서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는 빈곤여성의 증가이다. 경제적·권력분담에 있어서의 성불균형 또한 여성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주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는 여성, 특히 부양가족을 가진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거시경제정책은 이러한 경향에 대해 재사고와 재조직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정책은 거의 공식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또한 여성의 주도권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범위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분석의 경향은 빈곤경감 전략에 있어 중요하다.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은 빈곤 근절을 위한 거시경제적·사회적 정책과 전략 형성과정에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빈곤근절은 빈곤퇴치프로그램만을 통해서 달성될 수는 없으며, 모든 여성의 자원, 기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도모하기위해서 경제구조내에서 민주적 참여와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빈곤은 지속가능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및 생산수단의 결여를 포함하는 다양한 명시: 기아와 영양부족; 나쁜건강상태; 교육과 기타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제한되거나 혹은 부족한 접근; 질병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환율과 사망률; 무주택과 부적절한 주택공급; 위험한 환경; 사회차별과 배제등이다. 빈곤은 또한 의사결정과 시민, 사회, 문화적 생활참여의 부족으로 특징지워진다. 빈곤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의 집단 빈곤과 선진국에서의 빈곤지역과 같이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다. 빈곤은 생계수단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후퇴나 재해 또는 분쟁에 의해 발생되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빈곤과 가족지원체계, 공공기관, 안전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전적인 궁핍도 있다.

48. 지난 10년간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의 수는 남성의 수에 비해 불균형하게 증가해왔다. 빈곤의 여성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과정의 단기 결과로서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나라들에 있어 최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요인들에 부가해서 가족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기타 발생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인한 성역할의 고정성과 여성의 권력, 교육, 훈련, 생산자원에의 제한된 접근도 또한 책임이 있다. 모든 경제분석과 계획에 적절하게 성관점을 주류화 하지 못한 것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역설하지 못한 것 또한 요인이 되고 있다.

49. 여성은 가정·지역사회 및 직장에서 보수·무보수의 일을 통해서 경제 및 빈곤과의 투쟁에 기여한다. 여성의 힘의 증진은 빈곤근절의 중요한 요인이다.

50. 빈곤은 전체로서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별분업과 가족복지를 위한 책임으로 인해, 여성은 증가하는 결핍상황하에서도 가족의 소비와 생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불균형한 짐을 지고 있다. 빈곤은 특히 농촌가구의 여성에게 있어서는 심각하다.

51. 여성의 빈곤은 경제기회 및 자율의 부재, 신용, 토지소유권, 상속을 포함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 부족, 교육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의 부족 및 의사결정과정에의 최소한도의 참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빈곤은 여성을 성적 착취를 받기 쉬운 상황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52.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체계는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의 특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빈곤으로 전락하는 위험은 사회보장체계가 계속적인 보수고용의 원칙에 근거하는 곳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크며, 특히 노인에게 더 크다. 몇몇 경우를 보면 여성은 보수·무보수의 불균형한 일의 분포로 인한 일의 중단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못하다. 더구나, 노인여성은 노동시장으로의 재입직에 있어 보다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53. 여성과 남성에 대한 일반교육과 직업훈련 수준이 유사하고 차별에 대한 보호체계가 가능한 곳인 많은 선진국가에 있어서, 몇몇 부문의 지난 10년의 경제적 변혁은 여성의 실업 또는 여성 고용의 불안정한 특성을 눈에 띠게 증가시켜왔다. 결과적으로 빈곤한 사람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되어 왔다. 여학생의 취학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어떠한 자격증도 없이 교육체계를 떠나는 여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다.

54. 과도기 경제상태에 있는 국가와 근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변혁은 종종 여성의 소득감소나 소득박탈을 가져오기도 한다.

55.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성의 소득을 증진하고 영양, 교육, 보건의료 및 가족 내에서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본, 자원, 신용, 토지, 기술, 정보, 기술지원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통해 여성의 생산능력이 증가되어야 한다. 여성의 잠재적 생산능력의 표출은 빈곤의 순환을 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개발의 이익과 여성자신의 노동력의 산물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

56.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되며 지속가능한 경제적 성장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법적,문화적 지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환경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빈민, 특히 여성을 힘의 증진시키는 것을 인정하는 공평한 사회개발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초이다.

57. 성평등 증진과 여성지위향상을 지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조치의 성공은 모든 수준에서 적절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의 이행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일반정책에 성관점 통합을 기초로 하여야만 한다.

전략목표 A.1. 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역설하는 거시 경제정책과 발전전략을 점검 하고 채택하며 유지한다.

향후활동

58. 정부:

(a) 행동강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거시경제적,사회적 정책을 점검하고 수정한다.

(b) 성관점으로부터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구조조정, 외채문제, 세금, 투자, 고용, 시장 및 경제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포함한 빈곤과 불평등 특히 여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분석한다; 가족복지 및 조건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생산적 자산, 부, 기회, 소득과 서비스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증진하기 위해 적절하게 적응시킨다.

(c)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고안하고 감시하며, 광범위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고무하고,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역설하며,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전반적인 구조내에서 빈곤근절과 성에 근거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추구하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거시 경제적, 부문적 정책을 추구하고 이행한다.

(d)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생산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증진하고, 여성 특히 빈곤상태에서 살고 있는 여성의 기본적인 사회적, 교육적, 보건적 요구를 역설하기 위해 공공지출 할당을 재구성하고 목표로 한다.

(e)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및 인적자원을 할당하므로써, 적절하게 가구 및 국가의 식량보장과 식량자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 농업과 어업부문을 개발한다.

(f) 가구내에서 식량의 균등한 분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g) 빈곤상태에 살고 있는 여성이 불리한 경제적 환경을 견딜 수 있고, 위기 시에 그들의 생계, 자산,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총체로써, 적절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h) 공식 및 비공식의 양부문에서 여성근로자의 고용과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창출하며, 여성의 실업, 특히 장기간의 실업을 역설하는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i) 필요에 따라 여성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사회, 농업 및 관련 정책을 만들고 이행한다.

(j) 적절한 가격과 분배구조 사용을 포함하여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의 식량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고용계획을 포함한 빈곤퇴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k) 여성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 이주자에 대한 인권 및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한다; 여성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합법 여성이주자를 힘의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여성이주자의 기술, 해외교육 및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통해 합법 여성이주자의 생산적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력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촉진한다.

(l) 빈곤상태에서 생활하는 여성과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여성을 생산고용과 경제주류에 통합 혹은 재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다; 국내 난민 여성이 경제적 기회에 대해 완전히 접근하는 것과 이주여성과 피난민여성의 자질과 기술을 인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m) 여성 특히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과 여성세대주인 여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며, 봉착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여성이 알맞은 주택을 취득하고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n) 재정적, 기술적, 현장 지도 및 시장서비스에 대해 여성농업 및 어업생산자의(특히 농촌지역에서 자급농부 및 생산자를 포함하여) 접근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소득을 증진하고 가구의 식량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토지, 적절한 하부구조 및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리를 부여하고, 적절하게 생산자 자신의 시장에 근거한 협력의 개발을 장려한다.

(o) 사회보장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사회보장 체계를 만들거나 혹은 모든 생애단계에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토대 위에 놓기 위하여 사회보장체계를 검토한다.

(p) 빈곤상태하에 있는 여성이 도달할 수 있게 특별히 고안된 법률 문해를 포함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한다.

(q) 토착민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토착민 여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택해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서 개발과정에 있어 기회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지게 한다.

59.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지역개발기관을 포함한 다자 재정 및 개발기관과 양자 개발협력을 통해:

(a)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만들어진 공약에 따라, 빈곤근절 목적에 기여하며 빈곤상태하에 살고 있는 여성을 목표로 하는 자원의 유효성을 최대화하고 모든 가능한 재원과 장치를 사용하는 적절하고 예상가능한 새롭고 부가적 재정자원의 활성화를 모색한다.

(b) 구조 조정 및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대출 프로그램을 고안 및 이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성관점을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한 분석 능력을 강화한다.

(c) 부채소멸 혹은 기타 부채 경감조치를 포함한 부채절감이 담긴 1994년 12월 파리클럽(Paris Club)에서 동의한 부채탕감을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특히 여성향상을 포함한 개발을 목표로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외채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발전 지향적이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행동강령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개발프로그램과 사업에 적합한 부채차환기술을 개발한다.

(d) 저소득 국가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높은 다국적 부채를 가진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검토할 국제재정기관을 요청한다.

(e)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있어 취약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지역사회의 주변화를 방지하며, 경제자원과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접근취득 및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안함으로써 이러한 집단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보장한다.

(f) 여성이 전이 비용에 대한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감소하고 긍정적 영향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사회영향접근과 기타 관련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개발에 관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영향을 점검한다; 고양되고 목표로 설정된 사회개발대출과 함께 조정대출을 보완한다.

(g) 여성이 지속가능한 생계를 세우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환경을 만든다.

60. 국가·국제 비정부기구 및 여성그룹:

(a) 사회개발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농촌 토착민 여성, 여성세

대주, 젊은여성, 노인여성, 피난민여성, 이주여성, 장애여성과 같은 가장 빈곤하고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을 향한 빈곤 퇴치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기관, 비정부기구, 풀뿌리 및 여성그룹을 포함한 개발과정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를 동원한다.

(b) 행동강령에 초안되고 국가와 사적부문으로부터의 실시의무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빈곤근절에 관한 권고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로비를 하며, 적절한 감시기구와 기타 관련 활동을 설립한다.

(c) 상기 기관의 활동에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성을 포함하고 개발프로그램에 있어서 청소년 단체가 점차적으로 효과적인 동반자가 되고 있음을 인식한다.

(d) 정부와 사적부문이 협력하여 건강, 교육, 사회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국가전략 개발에 참여하여, 빈곤상태하의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이 이러한 서비스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정부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농촌 및 외딴 지역에 도달하기 위해 성관점을 가진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자금조달을 모색한다.

(e) 정부, 고용주, 기타 사회 파트너 및 관련 당자자와 협력하여, 여성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광범위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교육, 훈련, 재훈련 정책에 기여한다.

(f) 상속, 토지 및 기타 재산소유, 신용, 천연자원 및 적절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발휘한다.

전략목표 A.2.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행정적 시행을 개정한다.

향후활동

61. 정부:

(a) 특히 빈곤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도달할 수 있게 고안된, 법률 문해를 포함한 무료 혹은 저렴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b) 상속, 토지 및 기타 재산소유, 신용, 천연자원과 적절한 기술소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경제자원에 여성이 충분히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 행정적 개혁을 착수한다.

(c) 토착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번의 비준을 고려한다.

전략목표 A.3. 여성에게 저축, 신용기제 및 기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향후활동

62. 정부:

(a) 공식적인 은행과 중간기관의 자본 활성화와 신용이용도 증가를 위한 법적 자원, 여성을 위한 훈련, 기구강화를 포함하여 공식적인 은행과 중간대출기관간의 유대강화를 통해 농촌, 외딴 지역, 도시지역의 여성경영인을 포함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의 재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고양한다.

(b) 재정기관과 비정부기구와의 유대를 고무하고, 신용을 여성의 서비스 및 훈련과 통합하며 농촌여성에게 신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혁신적인 대출업무를 지원한다.

63. 정책을 시험하는 상업은행, 전문재정기관 및 사적부문:

(a) 빈곤상태의 여성에게 도달하는데 효과적이며, 거래비용삭감과 위험재정의에 있어서 혁신적인 신용과 저축방법을 사용한다.

(b) 담보를 위한 전통적인 자원에 대해 접근할 기회가 부족한 젊은 여성을 포함한 여성을 위한 특별대출창구를 개설한다.

(c) 예를 들면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최소한의 예치금과 기타 필요조건을 줄임으로써 은행업무를 단순화한다.

(d) 가능한 곳에서는 신용 및 재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의사결정에 여성고객의 참여와 공동소유를 보장해야 한다.

64. 다자 및 양자 개발 협력기관:

자본과/혹은 자원의 제공을 통해, 공식 및 비공식 양부문에 저소득, 소규모 및 영세 규모의 여성경영자와 생산자를 위해 일하는 재정기관을 지원한다.

65. 정부와 다자 재정기관은 적절하게: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형태의 자본화, 재재정화 및 기구개발지원을 통해 다수의 저소득의 여성과 남성에 적용되는 실행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을 지원한다.

66. 국제기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 및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의 소득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기업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어진 프로그램 및 사업을 위한 기금을 증가한다.

전략목표 A.4. 성에 근거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역설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향후활동

67. 정부, 국제기구, 학술 연구기관 및 사적부문:

(a) 구조 조정 계획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제정책 결정의 모든 부문에 성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해 개념적, 실천적 방법론을 개발한다.

(b)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성영향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연구결과를 보급한다.

68. 국가 및 국제통계 기구:

(a) 빈곤 및 경제활동의 모든 측면에 대한 성별,연령별 분리자료를 수집하고, 성관점으로부터 경제수행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질적, 양적 통계지표를 개발한다.

(b) 무보수 및 가사부문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포함한 국가경제에 대한 여성의 일과 기여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수단을 고안하며, 여성의 무보

수일과 빈곤에 대한 발생률 및 취약성과의 관계를 조사한다.

B. 여성의 교육과 훈련

69. 교육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평등, 발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다. 비차별적 교육은 소녀와 소년 모두에게 이로우며 궁극적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보다 평등한 관계에 기여한다. 보다 많은 여성이 변화의 대행자가 되려면 교육자격에의 접근 및 취득에 대한 평등이 필요하다. 여성의 문해는 가족내의 건강, 영양 및 교육을 향상시키고, 사회내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힘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대단히 높은 사회적, 경제적 보상을 가진 소녀와 여성을 위한 형식, 비형식 교육과 훈련에의 투자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속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최적의 수단중의 하나라는 것이 증명되어왔다.

70. 지역적으로 보면, 교육시설에의 접근이 여전히 부적절한 아프리카의 일부지역, 특히 소사하라아프리카 지역 및 중앙아시아를 제외하고는, 소녀와 소년은 초등교육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이룩하였다. 소녀와 소년이 평등한 접근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중등교육에 있어서 진보를 보였다. 고등교육에의 소녀와 여성의 등록은 상당히 증가했다. 많은 국가에서 사립학교도 모든 단계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데 있어 중요한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타일랜드, 좀티엔, 1990)과 기본적인 학습 욕구에 부응하는 행동기틀12/을 채택한 만인을 위한 세계 교육회의 이후 5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적어도 6천만명의 소녀를 포함하여 대략 1억명의 아동은 초등교육에 대한 접근기회조차 없으며, 전세계의 9억 6천만의 성인문맹중 3분의 2이상이 여성이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특히 소사하라-아프리카 및 몇몇 아랍국가에서 주로 나타나는 높은 문맹률은 여성향상 및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물로 남아있다.

71. 관습적 태도, 조혼, 임신, 부적절하고 성편견적인 교육 및 교육자료, 성희롱 및 적절하고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학교시설의 부족 때문에 교육에 대한 소녀의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은 많은 지역에서 지속되고 있다. 소녀는 아주 어린 나이에 과중한 가사일을 떠맡는다. 소녀와 젊은 여성은 교육 및 가사책임을 모두 떠맡을 것이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종종 낮은 학문적 성취와 교육체계로부터의 조기탈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여성생애의 모든 측면에 있어 오래 지속되어온 결과이다.

72. 여성과 남성 및 소녀와 소년의 생각, 의식, 종교 및 신념의 자유를 존중하여, 이들이 동등하게 취급되고 완전한 잠재력을 발휘하기위해 고무되고, 교육자료가 여성과 남성의 비정형화된 이미지를 증진하는 교육 및 사회환경의 창조는 여성차별에 대한 원인과 여성과 남성사이의 불평등을 제거하는데 유효하게 될 것이다.

73. 여성은 청년시절 습득한 것을 넘어 현존하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애학습의 개념은 자원활동, 무보수 노동, 전통적 지식을 포함한 비형식 방법에서 발생하는 학습뿐만 아니라 형식 교육과 훈련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포함한다.

74. 교육과정 및 교수자료에는 성편견이 많이 잔존하며, 소녀 및 여성의 특별한 요구에는 거의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에게 사회에서 완전하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기회를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여성 및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단계에서 교육자들의 성인식부족은 성차별적인 경향을 강화하고 소녀의 자부심을 훼손함으로써 남성과 여성간의 현존하는 불평등을 강화한다. 성교육 및 재생산 보건교육의 부족은 여성과 남성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75. 특히 과학 교육과정은 성편견적이다. 과학교과서는 여성과 소녀의 일상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여성과학자를 인정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소녀는 종종 일상생활을 개선시키고 고용기회를 증진시키기는데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수학 및 과학에서의 기초교육과 기술훈련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과학 및 기술에 있어 진보된 연구는 직업 및 기술훈련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함으로써, 국가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있어서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성을 준비시키고 있다. 기술은 신속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은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설계부터 적용, 감시, 평가단계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이다.

76. 높은 수준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수준과 모든 학술영역에서 소녀와 여성의 접근과 보유는 전문적 활동에 있어 계속된 진보요소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여전히 제한된 수의 학문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77. 대중매체는 강력한 교육의 수단이다. 교육수단으로써 대중매체는 여성향상 및 발전을 위한 교육자, 정부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전산화된 교육 및 정보체계는 점점 학습 및 지식보급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텔리비젼은 특히 젊은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긍정적 및 부정적 방법으로 여성 및 소녀의 가치, 태도 및 인식을 형성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자가 중요한 판단 및 분석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다.

78. 많은 국가에서 특히 소녀와 여성을 위해 교육에 배정된 자원은 불충분하며, 조정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몇몇 경우는 더욱 감소되었다. 이러한 불충분한 자원할당은 인간의 발전, 특히 여성의 발전에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다.

79.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석은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효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교육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및 부적절한 기회를 언급함에 있어서, 정부 및 기타 관계자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관점을 주류화하는 능동적이며 눈에 보이는 정책을 장려해야한다.

전략목표 B.1.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향후활동

80. 정부:

(a)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연령, 혹은 장애, 혹은 기타 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 있어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목표를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불만을 역설하기 위한 절차수립을 고려한다.

(b) 2000년까지 기본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연령 아동의 80%가 초등교육을 완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성간격차를 청산한다; 2015년전에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 초등교육을 제공한다.

(c) 여성이 경력개발, 연수, 장학금, 연구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적절한때 적극적인 행동을 채택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성적 불균형을 제거한다.

(d) 교육행정과 정책 및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동등한 교육 및 훈련기회와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성인지적 교육체계를 만든다.

(e) 부모, 청소년기구를 포함한 비정부기구, 지역사회 및 사적부문과 협력하여, 젊은 여성에게 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학술 및 기술훈련, 진로계획, 지도력, 사회기술, 일의 경험을 제공한다.

(f) 적절한 예산자원 할당을 통해 소녀의 입학률과 재학률을 증가한다; 가족이 부담하는 소녀의 교육비용을 최소화하고, 여아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캠페인, 탄력적 학교일정, 장려금, 장학금 및 기타 방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 및 지역사회 지원을 얻음으로써; 종교, 인종 혹은 문화에 근거하는 차별적인 법률 혹은 입법조치를 폐지하는 것을 통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교육기관에서 존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g) 적절하고 가격이 알맞으며 물리적으로 접근가능한 탁아시설과, 재학기간동안 자녀와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고무하고,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계속하고 끝마치도록 하는 부모교육을 포함한 임신한 청소녀와 어린 어머니의 학교교육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교육환경을 조장한다.

(h) 모든 연령의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개발과정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아래 발전하고 완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지식, 능력, 적성, 기술 및 도덕적 가치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에 의해 여성과 남성간의 교육의 질과 동등한 기회를 향상한다.

(i) 소녀의 향후 경력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들에게 학술적, 전문적 교육과정을 택하도록 장려하는 이용가능한 비차별적이고 성인지적인 전문학교 상담과 생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

(j)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 비준을 장려한다.

전략목표 B.2. 여성의 문맹을 퇴치한다.

향후활동

81. 정부, 국가·지역·국제기구, 양자 및 다자 기여자 및 비정부기구:

(a) 농촌여성,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국내난민여성, 장애여성에 역점을 두고, 여성의 문맹률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반까지 줄인다.

(b) 2000년까지 소녀를 위한 초등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하고 초등교육 완수

에 있어 성평등보장을 모색한다.

(c) 만인을 위한 세계교육선언(좀티엔)에서 권고되어진 것처럼 기본적이며 기능적인 문해에 있어 성간 격차를 제거한다.

(d)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불균형을 좁힌다.

(e) 만인을 위한 총체적 문해를 장려하는 학문에 있어 성인과 가족의 참여를 고무한다.

(f) 문해, 생애기술, 과학적·기술적 지식을 함께 증진하고 현재 목표와 기준을 고려한 문해에 대한 정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한다.

전략목표 B.3. 직업훈련, 과학, 기술 및 성인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향상한다.

향후활동

82. 정부는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a) 고용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 특히 젊은 여성과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재훈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한다.

(b) 교육체계내에서 소녀와 여성을 위한 비형식교육기회에 대한 인정을 한다.

(c) 과학, 기술, 성인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직업훈련과 훈련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혜택에 대해 여성과 소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d) 직업이 없는 여성에게 자영과 기업기술의 개발을 포함한 취업기회를 향상하고 넓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e) 직업 및 기술훈련을 다양화하고, 경영훈련 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공학, 환경과학 및 기술, 정보기술과 첨단기술과 같은 분야에 있어 소녀 및 여성의 접근과 재학을 개선한다.

(f) 식량 및 농업연구, 현장지도 및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증진한다.

(g) 과학 및 수학교사가 여성의 생애에 있어 과학과 기술의 연관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각 전문분야 협력과정 개발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이 비전통적 경력에 대한 완전한 직업선택을 위한 훈련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 및 교재의 개정을 장려하고, 지원적인 훈련 환경을 고무하며,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h) 특히 여성이 없거나, 적은 분야인 기술 및 과학분야에 보다 많은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적극적 조치를 만들고 채택한다.

(i) 모든 수습 프로그램에 여성의 참여를 고무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j) 소득창출 기회와 특히 풀뿌리수준의 여성단체를 통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 및 생산·시장·경영·과학과 기술에 대한 여성의 기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농업, 어업, 산업, 경영, 미술공예에 있어서 여성을 위한 기술, 관리, 농업 현장지도 및 매매분야의 훈련을 증가한다.

(k)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여성, 장애여성, 합법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난민여성을 위해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질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전략목표 B.4. 비차별적 교육 및 훈련을 개발한다.

향후활동

83. 정부, 교육당국, 기타 교육 및 학술기관:

(a) 제언을 만들고, 모든 관련분야 - 출판업자, 교사, 공공당국, 부모연합 등과 연합하여 교사훈련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을 위한 비차별적 교과과정, 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한다.

(b) 위 29항에서 정의되어진 가정과 사회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역할, 기여에 관한 의식을 증진하는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취학전 단계부터 소녀와 소년간의 평등, 협동, 상호존중 및 책임분담을 장려하고 특히 소년이 그들 자신의 가사상의 요구를 돌보며 가족과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교육 모듈을 개발한다.

(c) 교사와 교육자에게 성인지교습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에 관한 의식을 증진하는 교사와 교육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한다.

(d) 모든 단계에서 여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학교에 여학생을 유치·보유하기 위해, 여교사 및 여교수가 남교사 및 남교수와 동등한 기회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한다.

(e) 평화로운 분쟁해결에 관한 훈련을 도입하고 증진한다.

(f) 교육정책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을 획득한 여성의 비율, 특히 모든 단계의 교육과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해 온 과학 및 기술 분야같은 학문분야에 여교사 비율을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g) 모든 단계의 교육, 특히 학술기관의 대학원 수준의 성연구와 조사를 지원하고 개발하며, 대학 교과과정, 교과서, 보조교재를 포함한 교재개발과 교사훈련에 이들을 적용한다.

(h) 학생과 민간사회의 성인으로써 지도적 역할을 취할수 있도록 모든 여성을 격려하기 위해서 지도자 훈련과 기회를 개발한다.

(i) 특히 대중매체와 협력하여 대중 특히 부모가 아동을 위한 비차별적 교육의 중요성과 소녀와 소년의 동등한 가족책임분담을 깨닫게 만드는 다중언어사용에 관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한다.

(j) 유엔협약에 나타나듯이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의 교육, 특히 대학원 및 대학원 이후의 법학, 사회학, 정치학 교과과정등의 고등교육기관을 고무함으로써, 성영역을 통합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k) 여성건강문제에 관한 형식교육내에서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적, 사회적 장애물을 제거한다.

(l) 부모의 지도와 후원, 교육직원 및 기관과 협력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 성병 특히 HIV/AIDS와 성폭력 및 성적 학대와 같은 현상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요구뿐만 아니라 개인 발전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책임에 대한 인

식을 증진하고 책임을 맡는 것을 돕기 위해 소녀와 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통합된 서비스의 창설을 장려한다.

(m) 접근하기 쉬운 오락 및 체육시설을 제공하고, 교육 및 지역사회 기관에 소녀 및 모든 연령의 여성을 위한 성인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화하며, 코치, 훈련, 감독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있어서 국가, 지역 및 국제수준의 참가자로서 여성 향상을 지원한다.

(n) 교육에 대한 토착민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인식하고 지원하며, 토착민 언어의 가능한 범위까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교과과정 및 보조교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과정에 토착민 여성의 참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토착민 여성의 요구, 열망 및 문화에 반응하는 교육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을 장려한다.

(o) 토착민 여성의 예술적, 정신적, 문화적 활동을 인정하고 존경한다.

(p) 성평등, 문화적, 종교적 및 기타의 다양성이 교육기관 내에서 존중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한다.

(q) 알맞고 적절한 기술 및 대중매체, 예를 들면 라디오 프로그램, 카세트, 이동차량 등의 사용을 통해 지방 및 농업여성을 위한 교육, 훈련, 관련 정보프로그램을 증진한다.

(r) 건강, 영세기업, 농업, 법적 권리에 관한 농촌여성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농촌여성을 위한 비형식교육을 제공한다.

(s) 임신한 청소녀과 어린 어머니를 위한 형식교육의 접근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탁아 및 기타 지원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전략목표 B.5. 교육개혁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할당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향후활동

84. 정부:

(a) 기초 교육을 위한 증가된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내에서 재할당함으로써, 교육부문에 대해 요구된 예산 지원을 제공한다.

(b) 관련 부처에서 교육개혁과 조치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를 설립하며, 점검 노력에 의해 제기되어진 문제를 역설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설립한다.

85. 정부, 적절한 사적·공적기관, 재단,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a) 혜택을 덜 받는 인구를 특별히 강조하여 동등한 근거하에 소년과 남성은 물론 소녀와 여성이 교육을 끝마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에 사적·공적기관, 재단, 연구기관 및 비정부기구로부터의 추가재원을 동원한다.

(b) 모든 소녀와 여성을 위한 기회를 향상하기 위해 수학, 과학, 컴퓨터 기술에 관한 프로그램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제공한다.

86.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양자 기여자와 재단을 포함한 다자 개발기관:

(a) 개발지원프로그램에 있어 우선순위로써 소녀와 여성의 교육 연수 요구를 위한 재원증가를 고려한다.

(b) 대출 및 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구조조정과 경제회복 프로그램에 있어서 여성교육을 위한 재원이 유지되거나 혹은 증가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수혜국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고려한다.

87. 세계수준의 국제·정부간 기구, 특히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a) 국가, 지역, 국제기구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지표를 사용하여 성취된 진보에 대한 평가에 기여하며, 교육훈련 기회와 모든분야 특히 초등 및 문해프로그램의 성취수준에 관한 여성과 남성 및 소년과 소녀간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에 있어 정부를 재촉한다.

(b) 교육, 훈련 및 조사, 모든 분야 특히 기초교육과 문맹제거의 성취수준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좁히는데 있어서의 진보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c) 교육에 대한 여성 및 소녀의 권리를 증진하는 국제캠페인을 전개한다.

(d) 여성과 소녀를 위한 기초교육에 대해 자원의 많은 비율을 할당한다.

전략목표 B.6. 소녀와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과 훈련을 증진한다.

향후활동

88. 정부, 교육기관, 지역사회:

(a) 지역사회와 국가에서 생활하고, 기여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여성과 소녀가 계속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유효성을 보장한다.

(b) 어머니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탁아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c) 모든 단계의 여성생애에서 여성활동간에 변천을 활성화하는 평생학습을 위한 융통적인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

C. 여성과 보건*

89. 여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의 향유는 여성의 삶과 복지 및 공적·사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상태이며, 단순히 질병 혹은 질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성의 건강은 감정적, 사회적, 신체적 안녕를 포함하며, 생물학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건강과 복지는 대다수의 여성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여성이 건강에 관한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주요 장애물은 남성과 여성 및 지리적으로 다른 지역, 사회적 계급, 토착민과 인종집단의 여성간 불평등이다. 국가 및 국제 포럼에서 여성이 생애주기를 통해 최적의 건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족 책임분담을 포함한 평등, 발전, 평화가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강조해왔다.

90. 여성은 아동기 질병, 영양부족, 빈혈, 설사병, 전염병, 말라리아, 기타 열대질병, 결핵 등의 예방과 처치를 위한 1차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기본적 보건자원에의 접근과 사용에 있어 상이하고 불평등하다. 여성은 또한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 유지하는데 있어 상이하고

* Holy See는 이 부문에 전반적인 유보를 표명했다. 1995년 9월 14일 열린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Holy See의 대표가 한 연설에서 유보가 표명되었다(본보고서 5장 11항 참조).

불평등한 기회를 소유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응급산과 서비스의 부족 또한 특별 관심이다. 보건정책 및 프로그램은 종종 성정형화를 영속시키고, 사회경제적 불균등 및 여성사이의 기타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에 관한 자율성부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은 보건체계내의 성편견과 여성에 대한 부적당하고 부적절한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91. 많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과 최소의 선진국에서는 공공보건지출의 감소와 몇몇의 경우 구조조정은 공공보건 체계의 악화를 조장한다. 부언하면 알맞은 보건의료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한 보건의료체계의 사유화는 보건의료이용도를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녀와 여성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포함한 여성의 다역할을 종종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에게 불균형한 책임 또한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은 필요한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92. 건강에 대한 최상의 수준을 향유할 여성의 권리는 전생애주기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과 같이 동일한 건강 조건의 많은 부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상이하게 경험을 한다.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여성이 많음과 폭력에 대한 경험, 여성과 소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인종 및 기타 형태의 차별, 여성의 성적·재생산적 삶에 대해 많은 여성이 가지는 제한된 권력과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 부족은 여성의 건강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현실이다. 가구내에서 소녀와 여성을 위한 식량의 부족과 불공정한 분배, 특히 농촌 및 도시빈곤지역에 있어서 안전한 물·위생시설·연료공급에 대한 부적합한 접근, 불충분한 주택공급조건, 과도한 부담을 모두 진 여성과 가족은 여성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호한 건강은 생산적이며 성취하는 생을 영위하는데 필요불가결하며 여성의 모든 건강측면, 특히 여성자신의 출산력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의 힘의 증진에 있어 기본적인 것이다.

93. 종종 아들 선호에서 기인하는 영양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의 소녀에 대한 차별은 소녀의 현재 및 미래의 건강과 안녕을 위태롭게 한다. 소녀로 하여금 조혼, 임신 및 해산하게끔 강요하고 여성 생식기 절단과 같은 유해한 시술을 강요하는 환경은 심각한 건강위험에 빠지게 한다. 사춘기 소녀는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너무도 빈번하게 가지지 못하는, 필요한 건강과 영양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성·재생산 건강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부적절하거나 혹은 완전히 부족하며, 사생활·비밀·존경·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대한 젊은 여성의 권리는 종종 고려되지 않는다. 사춘기 소

녀는 소년보다 성적학대, 폭력, 매춘 및 무방비적이고 조숙한 성관계 결과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심리사회학적으로 더욱 취약하다. 사전지식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하에서의 조기 성경험 추세는 안전하지 않은 유산은 물론 원치 않은 임신, 조기임신, HIV감염, 기타 성병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조기임신은 여성의 교육적·경제적·사회적 지위 증진에 있어 지속적인 방해물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조혼과 이른 어머니역할은 가차없이 교육 및 취업기회를 빼앗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젊은 여성과 자녀의 삶의 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젊은 남성은 종종 여성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거나, 성적 속성과 재생산의 문제에 있어 여성과 책임을 공유하도록 교육받지도 않는다.

94. 재생산 건강은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이며, 단순히 재생산체계, 기능 및 과정과 연관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질병 혹은 질환이 없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재생산 건강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및 여부, 시기, 빈도를 결정할 자유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출산규정에 대한 다른 선택 방법과 여성이 임신과 자녀양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고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입수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계획 방법에 접근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이 마지막 조항 안에 함축되어 있다. 재생산 건강에 관한 위의 정의에 있어, 재생산 보건의료는 재생산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재생산 건강과 안녕에 기여하는 방법, 기술, 서비스로써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재생산 건강은 단순히 재생산과 성병과 관련된 상담 및 보호가 아닌 삶과 개인관계 증진이 목적인 성적 건강을 포함한다.

95. 위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재생산권은 국내법, 국제인권문서, 기타 합의 문서에서 이미 인정한 특정 인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부부와 개인들이 자유롭고 책임있게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보와 방법을 가지는 모든 부부와 개인들의 기본적 권리와 성적, 재생산 건강에 대한 최상의 수준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 문서에 나타나 있듯이 차별, 강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하는 권리도 포함한다. 이 권리의 행사에 있어, 그들의 삶과 향후 자녀에 대한 요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참작해야 한다. 만인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책임있게 행사하도록 증진하는 것은 가족계획을 포함한 재생산 건강의 영역에서 정부·지역사회 지원의 정책 및 프로그램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들 공약의 일부로써, 상호존중하고 평등한 성적관계 증진과 특히 청소년이 그들의 성적속성을 긍정적이며 책임있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들의 교육 및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재생산

건강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세계의 많은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인간의 성적속성에 관한 부적절한 지식수준, 부적합하거나 혹은 열악한 재생산 건강정보 및 서비스; 위험부담이 큰 성적 행동의 만연; 차별적인 사회적 실행; 여성과 소녀에 대한 부정적 태도; 많은 여성과 소녀가 그들의 성적·재생산적 삶에 대해 가지는 제한된 힘. 청소년들은 많은 국가에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접근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특히 취약하다. 노인여성과 남성은 종종 부적절하게 언급되는 재생산적, 성적 건강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96. 여성의 인권은 성적·재생산적 건강, 강제·차별·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 성적 속성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 통제하고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에 대한 완전한 존경을 포함하여 성관계와 재생산 문제에 있어 여성과 남성사이의 동등한 관계는 성행위와 결과에 대한 상호존중, 동의, 분담된 책임을 요구한다.

97. 게다가, 여성은 성적속성 및 재생산과 연관된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부적절한 대응과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건강위험에 빠지기 쉽다. 임신과 출산에 연관된 합병증은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재생산 연령에 있는 여성의 사망과 병의 주요원인이다. 유사한 문제가 경제적 과도기에 있는 몇몇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안전하지 못한 유산은 우선적으로 가장 빈곤하고 가장 어린사람이 가장 큰 위험 부담을 가지는 심각한 공공보건문제로써, 많은 여성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 건강문제, 상해의 대부분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에 저촉되지 않은 출산 규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타 방법과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무사히 넘길 수 있으며,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뿐 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알맞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부가 선택한 가족계획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고 접근할 수 있는 여성과 남성의 권리를 인정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가족계획방법과 응급산과보호를 포함하는 적절한 의료보호서비스에 대한 개선된 접근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방법은 활동프로그램의 관련 항에 관한 국제인구개발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역설되어야 한다14/.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성 재생산권리에 대한 무시는 교육적, 경제적, 정책적 힘의 증진을 위한 기회를 포함한 공적 및 사적 생활에서 여성의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자신의 출산을 조절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은 기타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 중요한 토대를 형성한다. 성행위 및 재생산 행위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간의 분담된 책임은 여성건강증진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98. HIV/AIDS 및 기타 성병, 때때로 성폭력의 결과로 인한 전염은 여성의 건강 특히 사춘기 소녀와 젊은 여성의 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여성은 종종 안전하고 책

임있는 성적 실행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보 및 서비스에 거의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HIV/AIDS와 기타 성병에 새로이 감염된 모든 성인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사회적 취약성 및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역학관계가 성병확산을 조절할 수 있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 안전한 성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HIV/AIDS의 결과는 여성의 건강을 넘어서 어머니, 보호자 및 가족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기여자로서의 역할에까지 미치고 있다. HIV/AIDS와 기타 성병의 사회적, 발전적, 건강결과는 성적관점으로부터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99.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신체적·심리적 학대 및 매매를 포함한 성적 및 성에 근거한 폭력과 다른 형태의 학대 및 성적 착취는 소녀와 여성을 신체적, 정신적 외상, 질병 및 원치않는 임신의 위험에 빠뜨린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여성이 건강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100. 약물남용뿐 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및 증가하는 가정폭력의 빈도와 더불어 주변화, 무능 및 빈곤과 연관된 정신적 혼란은 증가하는 여성의 기타 건강문제중의 하나이다. 전세계적으로 자신과 자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하는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수의 여성이 단순하고 유해한 조건의 공식 혹은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고,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건강문제 역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불임뿐만 아니라 유방암, 자궁암 및 재생산 체계와 관련된 기타 암에 걸린 여성의 수는 늘고 있으며, 이러한 암은 조기 발견되면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될 수 있다.

101. 기대수명의 연장과 노인여성수의 증가는, 이들 건강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요구한다. 여성에 관한 장기적 건강 전망은 생애조건과 영양부족 및 신체활동 부족과 같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심장혈관 질환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증가시킬지도 모르는 폐경기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노령화에 따른 기타 질환과 여성의 노령화 및 장애와의 상호관계 또한 특별 관심을 요구한다.

102. 여성, 특히 농촌이나 도시 빈곤지역의 여성은 남성처럼 환경 이변과 파괴로 인해 점차적으로 환경적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여성은 다양한 환경위험, 오염물질 및 물체에 각각 감염되기 쉬운 속성이 있으며, 노출됨으로 인한 각각의 상이한 결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103. 여성에 관한 보건의료의 질은, 지역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종종 불충분하다. 빈번하게 여성은 존중되지 못하고 사생활 및 비밀을 보장받지 못하며, 가능한 선

택권과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항상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 몇몇 국가에서는 여성생애사건에 불필요한 외과수술 및 부적절한 약물치료 등 과도한 약물치료가 일반적이다.

104. 종종 건강에 관한 통계자료는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및 취약하고 주변화되고 기타 관련 변수에 관해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관심을 끌고 소그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확립된 인구학적 기준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집되거나 분리되거나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성사망률, 이환율, 조건 및 질환에 관한 최근의 신빙성 있는 자료는 많은 국가에서 구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녀와 여성의 건강서비스 규정 및 이러한 서비스사용 유형, 여성을 위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가치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여성건강에 관한 중요한 주제는 적절하게 연구되지도 못해왔으며, 여성의 건강에 관한 연구는 종종 재원이 부족하다. 많은 나라의 심장질환에 관한 의학연구와 역학연구를 예로 들어보면 종종 남성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성별 특성은 아니다. 피임약을 포함한 약복용량, 부작용 및 효과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확립하기 위한 여성관련 임상실험은 거의 없으며 연구와 실험에 관한 도덕적 기준에 항상 적합치 못하다. 여성에 관해 투약된 많은 약품치료 의정서와 기타의학치료 및 증재는 성차에 관한 어떤 조사나 적용없이 남성에 관한 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105. 여성과 남성간의 건강상태에 관한 불평등,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및 부적절한 서비스에 관해 언급할 때, 정부와 기타 주체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적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하게 함으로써,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석은 여성과 남성 각각에 관한 효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전략목표 C.1. 생애주기를 통해 적절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와 정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증대한다.

향후활동

106. 비정부기구, 고용주 및 노동자 단체와 협력하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은 정부:

(a) 국제인구개발회의 및 사회개발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 사회개발정상회의의 행동프로그램15/, 여성차별철폐협약하의 국가당국의 의무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확정되

었듯이, 소녀와 모든 연령 여성의 건강에 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 근거한 공약을 지지하고 이행한다.

(b)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기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고, 여성과 소녀를 위한 이러한 권리 획득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를 국내 입법에 통합한다. 예를 들면;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건강에 관한 공약을 반영하고 여성이 어디에서 거주하던 간에 여성의 변화하는 역할과 책임에 부응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뿐 아니라 건강입법을 포함한 현존입법을 검토한다.

(c) 여성과 지역사회에 근거한 단체와 협력하여, 여성의 생애를 통해 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여성의 다중역할과 책임, 시간에 관한 요구, 농촌여성 및 장애여성의 특별요구, 연령·사회경제적·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요구의 다양성을 참작하여, 분산화된 보건서비스를 포함한 성인지 보건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행한다; 보건의료 우선순위와 프로그램의 확인 및 계획에 여성 특히 지역 및 토착민 여성을 포함한다; 여성보건서비스에 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광범위한 범위를 제공한다.

(d) 전생애주기를 통해서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허용한다.

(e) 가족계획 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성적, 재생산적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에서 동의했듯이 모성보호 및 응급산과보호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쏟는 더욱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가능하고 획득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한다.

(f) 보건종사자를 위한 건강정보, 서비스 및 훈련을 재설계해서 그들이 성인지적이 되게 하며, 개인간 정보기술을 고려한 사용자의 관점과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를 반영하게 한다; 이러한 서비스, 정보 및 훈련은 전체론적인 접근에 근거해야한다.

(g) 책임있고 자발적이며 정보에 근거한 동의 보장을 목표로 하는 여성보건서비스의 전달에 있어, 모든 보건서비스와 종사자가 인권 및 도덕적, 전문적, 성인지적 기준에 따르는 것을 보장한다; 기타 보건전문가를 관리하는 도덕적 기준뿐 만 아니라 의료윤리에 관해 현존하는 국제규약에 의해 지배되는 윤리규약을 발전, 이행, 배포하는 것을 장려한다.

(h)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투약 및 과도한 투약뿐 아니라 유해하고 의료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혹은 강제적인 의료적 개입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잘 훈련된 요원은 적당한 혜택과 잠재적 부작용을 포함하여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든여성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을 보장한다.

(i) 여성과 소녀를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특히 1차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재인식한다; 나쁜 건강과 모성이환율을 줄이고, 모성사망율을 2000년까지는 적어도 1990년 수준의 50%까지, 2015년까지는 다시 반으로 줄이는 세계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도달한다; 건강체계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또한 2015년이 되기전에 적절한 연령의 모든 개개인이 1차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접근가능한 재생산 보건의료를 만든다.

(j)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의 8.25 항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주요한 공공의료 관심인 불안전한 유산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인지하고 취급한다14/.

(k)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유산이 가족계획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정부와 관련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기구는 여성건강에 관한 그들의 공약을 강화하고, 주요 공공의료 관심으로써 불안전한 유산16/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취급하며, 확산되고 개선되어진 가족계획 서비스를 통해 유산에 대한 의뢰를 줄이는 것이 촉구된다. 원치않은 임신예방에 항상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하며 모든 시도는 유산에 대한 요구를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져야한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온정적인 상담에 대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체계내에서 유산과 연관된 어떤 조치 혹은 변화는 국가 입법과정에 따라 단지 국가 혹은 지역수준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다. 유산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산은 안전해야 한다. 여성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산으로부터 야기되는 합병증 처리를 위한 질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기회를 가져야한다. 유산후 상담, 교육, 가족계획 서비스는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반복되는 유산을 피하기 위해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프로그램 8.25항의 관점에서 불법 유산을 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법의 검토를 고려한다.

(l) 소녀의 요구, 특별히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한 행동증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준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영아와 아동 사망률 감소목표를 달성하는 반면—특별히 2000년까지 영아와 5세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1990년 수준의 1/3까지 혹은 더욱 낮은

1,000명당 50에서 70까지, 2015년까지 영아사망율을 1,000명당 35이하로, 5세미만 사망율을 1,000명당 45이하로 감소—소녀들이 불리한 이환율과 사망률의 성별 격차를 차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m) 소녀들이 성숙해 감에 따라 아동기로부터 성년기까지 보건상 유익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강 및 영양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계속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n) 노령화와 연관된 변화를 이해하고 순응하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또는 노인여성의 건강에 대한 요구, 특히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여성에 관심을 쏟음으로써 이들의 요구를 역설하고 취급하기 위한 정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개발한다.

(o) 어떤 형태의 장애를 가진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이 지원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p) 임산부와 수유부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정, 직장 및 다른 곳에서 일과 관련된 환경적, 직업적 건강위협을 완화하고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정책을 입안하고 프로그램을 고안하며 필요한 입법을 제정한다.

(q) 어떤 형태의 폭력 특히 가정폭력, 성적 학대 혹은 무력·비무력 분쟁에서 기인하는 기타 폭력 등을 경험한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을 인식하고 돌보기 위해서 정신건강서비스를 1차 보건의료 체계나 혹은 기타 적절한 수준으로 통합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1차 의료종사자를 훈련한다.

(r) 모유수유의 장점에 관한 공공홍보를 증진한다: 모유대체 시장에 대한 세계보건기구/국제연합아동기금(WHO/UNICEF) 국제법을 충분히 이행할 방법과 수단을 검토하고, 법적, 경제적, 실용적, 감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게 한다.

(s) 건강부문과 모든 수준의 관련 부문안에서 적절하게 정부정책입안, 프로그램설계 및 이행에 있어, 소녀와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일하는 비정부기구 특히 여성단체, 전문그룹 및 기타 기구를 지원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기제를 설립한다.

(t) 여성건강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간에 조정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웍 개발을 돕는다.

(u) 세계보건기구(WHO)의 상비약 모델 리스트를 지침서로 활용하여, 약 구입을 합리화

하고 양질의 제약, 피임 및 기타 약의 공급과 구비에 대해 확실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v) 여성 약물남용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적절한 처치와 재적응 서비스에 대한 개선된 접근을 보장한다.

(w) 가족과 국가식량 보존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보장하며, 영양에 있어서의 성별격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의 1/2까지 세계의 5세미만 아동의 심하고 보통의 영양부족 감소와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의 1/3까지 소녀와 여성의 철분부족 빈혈 감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영양회의의 영양에 관한 행동강령"17/에서 만들어진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모든 소녀와 여성의 건강상태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x)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공공분배체계를 실행한다.

(y) 토착민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하부구조와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을 보장한다.

전략목표 C.2. 여성의 건강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향후활동

107. 정부는 비정부기구, 대중매체, 사적부문 및 유엔기구를 포함한 관련 국제기구와 적절하게 협력하여:

(a) 여성생식기절단, 아들선호(여영아 살해와 출생전 성별 선택을 일으키는), 아동결혼을 포함한 조혼,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착취, 종종 HIV/AIDS 감염 및 기타 성병을 유발하는 성적학대, 약남용, 식량분배에 있어서 소녀와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의 생애, 건강, 안녕과 관련된 기타 유해한 태도 및 실행을 포함하고 인간 권리 및 도덕적 의료기준을 위배할 수도 있는 이와같은 실행을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에 특별히 역점을 둠으로써, 자아존중을 개발하고 건강에 대해 지식을 얻고 결정을 하며 책임을 갖고, 성적 속성과 출산에 관한 문제에 있어 상호존중을 이룩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녕의 중요성에 관해 남성을 교육하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가능케하는 형식 및 비형식 교육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둔다.

(b) 열악한 건강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을 줄이고 여성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의 빈곤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 및 인간개발, 교육, 고용정책을 추구한다.

(c) 가족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녀양육과 가사일을 동등하게 나누고, 가족을 위한 그들의 재정적 지원의 몫을 제공하도록 남성을 격려한다.

(d) 법을 강화하고, 기구를 개편하며 여성에 관한 차별을 제거하고 성적·재생산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남성이 지도록 격려하는 규범과 실행을 증진한다; 인간본연에 대한 충분한 존경을 보장하며, 여성이 재생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 행동을 채택하고, 강제적인 법과 실행을 제거한다.

(e) 아동능력개발과 일치하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된 아동의 권리행사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적절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 권리, 의무 및 법적 후견인 뿐만 아니라 정보, 사생활, 비밀보장, 존경 및 사전지식에 의한 동의에의 접근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참작하여, 공공건강캠페인, 미디어, 믿을만한 상담 및 교육체계를 통해 여성과 남성, 특히 젊은 사람이 건강에 관한 지식, 특히 성 및 재생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준비하고 배포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보장한다.

(f) 남성과 소년들에게 이용가능하게 만들어진 것과 똑같은 근거로 소녀와 모든 연령의 여성이 이용가능한 스포츠, 신체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체계, 작업장 및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한다.

(g) 위 107(e) 항에서 언급된 아동의 권리와 부모의 책임, 권리, 의무를 참작하여, 청소년의 특별한 요구를 인지하며, 성적·재생산 건강 문제 및 HIV/AIDS를 포함한 성병에 관한 교육 및 정보와 같은 적절한 특별 프로그램을 이행한다.

(h) 여성에게 건강 및 사회서비스로부터 적절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지역사회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성에 대한 불균형하고 증가하는 부담을 감소하는 정책을 개발한다.

(i) 모든 수준의 건강 체계에서 여성의 보수와 승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비차별적이며, 여성으로하여금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j) 건강 및 영양정보와 훈련이 모든 성인 문해 프로그램 및 기초수준의 학교교과의 필수 부분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k) 여성과 소녀에게 건강과 약물남용 및 중독과 관련된 위험을 알려주며, 약물남용과 중독을 저하시키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증진하는 전략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한다.

(l) 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골다공증의 예방, 진단 및 처방을 위해 전반적이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행한다.

(m) 재생산 체계와 관련한 유방, 자궁 및 기타 암의 예방·조기발견·치료를 역설하는, 매체 캠페인을 포함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수립하고/또는 강화한다.

(n) 특별히 빈곤지역과 지역사회에 있어서 건강에 대해 증가하는 위협을 제기하는 환경적 위험을 줄인다; 유엔환경개발회의18/에서 채택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동의했듯이 예방적 해결방법을 적용하고, 의제 21의 수행을 점검하는데 있어 환경과 관련된 여성의 건강 위험에 관한 보고를 포함한다19/.

(o) 중요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활동으로써 담배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건강위험과 흡연을 줄이기 위한 정규적이며 교육적 조치에 관한 요구에 대한 의식을 여성, 건강전문가, 정책결정자 및 일반대중간에 창출한다.

(p) 의학 교과과정과 기타 보건의료 훈련이 여성건강에 관해 성인지적이고, 포괄적이며 필수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보장한다.

(q) 법의 입안과 집행을 포함하여 여성·젊은이·아동을 어떤형태의 학대—예를 들면 성적 학대, 착취, 매매, 폭력—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예방조치를 채택하고, 법적보호, 의학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

전략목표 C.3. 성병, HIV/AIDS와 성적, 재생산 건강문제를 역설하는 성인지적 주도권을 보증한다.

향후활동

108. 정부, 관련 유엔기구를 포함한 국제기구, 양자·다자 기여자 및 비정부기구:

(a) HIV/AIDS와 기타 성병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점검과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특히 HIV/AIDS 혹은 기타 성병에 감염되었거나 HIV/AIDS 유행에 영향을 받은 여성의 참여를 보장한다.

(b) 이에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실행에 대한 입법제정을 포함하여 HIV 감염과 기타 성병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에 기여할지도 모르는 법률을 점검하고 개정하며 실행을 퇴치하고, HIV/AIDS와 관련된 차별로부터 여성, 청소년, 어린 소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책 및 실행을 이행한다.

(c) 감염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온정적이고 지원적이며 비차별적인 HIV/AIDS 관련 정책 및 실행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기구뿐 아니라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부문을 고무한다.

(d) 감염된 여성이 여행중을 포함하여 낙인과 차별로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HIV/AIDS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특히 고려하여, 그들 국가에서의 HIV/AIDS 유행 정도를 인지한다.

(e) 여성과 소녀의 사회적 종속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힘의 증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성인지적 다부문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한다; HIV/AIDS와 기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남성이 그들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게 교육하며 가능케하는 프로그램 증진을 활성화한다.

(f) HIV 및 기타 성병으로부터 모든 연령의 여성을 보호할 지역사회전략 개발을 활성화한다; 감염된 소녀, 여성 및 그의 가족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며, 적시의 효과적이며 지속적이고 성인지적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모든 책임있는 당국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HIV/AIDS 유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모든 부문을 활성화한다.

(g) HIV/AIDS에 감염된 자 혹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에 걸린 사람과 생존자, 특히 아동과 노인을 위해, 여성자신이 제1차 보호자이거나 혹은 경제적 지원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자원과 혹은 시설제공을 포함하여, HIV/AIDS와 기타 성병에 관한 성인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한 국가능력을 지지하고 강화한다.

(h) HIV/AIDS와 기타 성병 및 모든 연령의 여성 및 남성 모두에 대한 이들의 영향예방에 관해 종교 및 전통 당국을 포함하여 부모, 정책 결정자 및 지역사회의 모든 수준의 여론지도자에게 웍샵, 특별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i) HIV/AIDS, 임신 및 모유수유를 포함한 갓난아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성병에 관한 모든 정보와 교육을 모든 여성 및 보건종사자에게 제공한다.

(j) 효과적인 동료교육과 현장지원 프로그램를 설립하고 확산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설계, 이행, 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성과 여성공식 비공식 단체를 지원한다.

(k) 상호 존중하고 공평한 성별관계의 증진과, 특히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성을 긍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관심을 준다.

(l) 특히 절제와 콘돔사용을 통한 HIV/AIDS와 기타 성병의 예방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절한 남성 방법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적, 재생산 행동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하는 위 107(e) 항과 관련한 부모역할을 인지하여 모든 연령의 남성 및 청년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고안한다.

(m) 제1차 보건의료 체계를 통해 HIV/AIDS를 포함한 성병과 관련한 적절하고 알맞은 예방서비스에 부모와 개인이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조항을 보장하고, 여성을 위한 상담과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 및 처치 서비스에 대한 조항을 확대한다; 가능한 곳에서는 성병치료를 위한 약품뿐 만 아니라 양질의 콘돔이 보건서비스에 공급되고 분배되는 것을 보장한다.

(n) HIV에 걸린 여성의 보다 높은 위험은 정맥약물 사용과 약물영향으로 인한 무방비적이며 무책임한 성적 행동을 포함한 위험부담이 큰 행동과 연관되어 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o) HIV와 기타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이 조절할 수 있는 알맞은 방법과 HIV/AIDS를 포함한 성병으로부터 여성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증진하는 전략 및 이러한 연구의 모든 측면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처치에 관한 방법에 대한 행동 지향적 연구를 지원하고 촉진한다.

(p) 여성의 HIV 감염과 다른 성병에 관한 연구와 비살정자항생제와 같은 여성이 조절하는 보호 방법 및 위험을 감수하는 남성과 여성의 태도와 실행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여성의 요구와 상황에 대해 역설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시작한다.

전략목표 C.4. 여성 건강에 관한 조사를 장려하고 정보를 배포한다.

향후활동

109. 정부, 유엔체계, 보건직종, 연구기관, 비정부기구, 기여자, 제약회사 및 대중매체는 적절히:

(a) 연구원을 훈련하며, 적절히 정책결정, 계획, 점검 및 평가에 있어, 기타 변수중 성별, 연령 및 기타 확립된 인구학적 기준,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수집, 분석, 분리된 데이터의 사용을 허용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b) 성인지적이며 여성중심의 보건연구, 치료, 기술을 증진하고, 여성이 알고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게 가능한 정보를 주는 현대의약과 전통적이며 토착적 지식을 연계한다.

(c) 가장 빠른 시기에 평등을 이룩하기 위해, 연구원 및 과학자를 포함한 보건직종의 지도급 자리에 있는 여성의 수를 증가한다.

(d) 여성 건강문제에 관한 예방적, 적절히 생물의학적, 행동적, 역학적, 보건 서비스 연구 및 특히 만성질환과 비전염성질병, 특별히 심장질환 및 상태, 암, 재생산 계통전염 및 상처, HIV/AIDS 및 기타 성병, 가정폭력, 직업건강, 장애, 환경과 관련된 건강문제, 열대질병 및 노령화에 따른 건강측면과 관련한 성 및 연령 불평등 영향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원인에 관한 연구를 위한 모든 출처로부터의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증대한다.

(e) 재생산 계통의 진전되는 암과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에 대해 여성에게 알려서 그들의 건강에 대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f) 어떻게 성에 근거한 불평등이 병인학, 유행병학, 서비스제공 및 활용과 치료의 최종결과를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연구를 지원하고 투자한다.

(g) 접근을 강화하고 서비스 전달의 질을 향상하며, 보건의료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하고, 여성에 대한 건강서비스제공과 여성에 의한 이러한 서비스 사용과 관련한 유형을 검토하기 위한 건강서비스 체계와 효력연구를 지원한다.

(h) 양쪽 성을 위한 자연적인 가족계획, HIV/AIDS와 기타 성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방

법, 이러한 질병을 진단하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을 포함한 출산력 조절을 위한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입수가능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여성과 남성의 재생산적, 성적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알맞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에 관한 연구를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의해 또한 성적관점 특히 여성의 관점으로부터 진행되어야 하며, 생물의학연구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윤리적, 의학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i) 안전하지 못한 유산16/은 여성의 건강과 삶에 주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산의 합병증 치료와 유산후 간호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유산이 차후 출산과 재생산 및 정신건강과 피임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인공유산의 결정요소와 결과를 이해하고 좀더 강조하기 위한 연구가 증진되어야 한다.

(j) 보건서비스 조항에 전통적 보건의료의 가치를 보존하고 통합하기 위하여 특히 토착민 여성들이 실시했던 유익한 전통적 보건의료를 인정하고 권장하며,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를 지원한다.

(k) 연구원, 정책결정자, 건강전문가 및 여성그룹에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배포할 수 있는 기구를 개발한다.

(l) 여성보건의 관점에서 인간게놈(genome)과 연관된 유전연구를 조정하고, 인정된 도덕적 기준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 관한 정보와 결과를 배포한다.

전략목표 C.5. 여성보건을 위한 자원을 증가하고 후속활동을 조정한다.

향후활동

110. 모든 수준의 정부는 적절하게 비정부기구, 특히 여성 및 청소년 단체와 협력하여:

(a) 2차·3차 보건의료 수준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함께 1차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위한 예산 할당을 증가하고, 소녀와 여성의 재생산적, 성적 건강에 대해 특별관심을 두며, 농촌 및 도시빈곤지역의 건강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다.

(b) 지역사회 참여와 지방재정 증진을 통해 보건서비스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개발한다; 필요한 곳에서는 여성의 특별 건강 요구를 역설하는 지역사회건강센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예산 할당을 증가한다.

(c) 지역사회에 근거한 성인지적 참여와 자가간호 및 특별히 고안된 예방보건 프로그램의 통합을 증진하는 지역보건서비스를 개발한다.

(d) 여성보건을 증진하고, 성별, 연령, 기타 확립된 인구학적 기준 및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분리된 질적, 양적 자료를 사용한 성영향평가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계획, 이행, 조정 및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목표와 일정을 개발한다.

(e) 여성보건정책과 프로그램 개혁에 대한 이행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부처 및 부처간 기구를 설립하고, 여성의 보건관심이 모든 관련 정부기구와 프로그램에 주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조정에 책임있는 국가계획 당국내에 고위급 전담기관을 적절히 설립한다.

111. 정부, 유엔 및 유엔특별기구, 국제재정기관, 양측 기여자 및 사적부문은 적절히:

(a) 여성보건에 대한 투자에 대해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할당을 적절하게 증가한다.

(b) 성·재생산 관련 건강을 포함한 보건부문에 청소년 관심을 역설하는 청소년 비정부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해 적절한 물질적, 재정적, 병참학적 지원을 제공한다.

(c) 여성보건에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주며, 진전을 보장하는 행동강령의 보건목표와 관련 국제조약을 통합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구를 개발한다.

D. 여성에 대한 폭력

112.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물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자유의 향유를 침해하고 또한 그를 해치거나 무력하게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일어난 경우 이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실패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이며 문제표명이 되어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식 및 그 사례와 그에 대처하는 조치 등은 나이로비회의 이후로 대폭 증대되었다.

모든 사회에는 여성과 소녀들은 수입, 신분과 문화계층에 따라 적든 크든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다.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113.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정신적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혹은 그를 초래할 수 있는 성에 기반한 폭력의 모든 행위를 뜻하며 이에는 공적 또는 사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압 또는 자유의 일시적 박탈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a)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구타, 가정내 여자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지참금관련 폭력, 혼인시 강간, 여성생식기 절단 및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적 관습, 배우자외의 폭력, 착취에 관련된 폭력 등을 포함한다.

(b) 일반적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직장내, 교육기관 및 그외 기관에서의 강간, 성적학대, 성희롱과 위협, 여성인신매매와 강제 매춘 등을 포함한다.

(c) 국가에 의해 방조되거나 묵인되는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114. 여성에 대한 폭력의 기타 행위는 무력분쟁상황에서의 여성의 인권침해 특히 살상,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화와 강제임신 등을 포함한다.

115.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는 강제불임과 강제낙태, 피임제의 강압적 강제적 사용, 여영아 살해, 태아성감별 등도 포함한다.

116. 소수민족집단 여성, 토착민 여성, 난민여성, 여성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이주자, 농촌 및 외딴 지역에 사는 빈곤여성과 빈민여성, 감금상태의 여성, 여자어린이, 장애인여성, 노인여성, 피난민여성, 송환된 여성, 빈곤상황하의 여성과 무력분쟁 및 외국인점령, 침략전쟁, 내란, 인질억류를 포함한 테러행위의 상황하에 있는 여성 등과 같은 여성집단은 특히 폭력에 취약하다.

117. 가정내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국가에 의해 조장되거나 묵인되는 폭력행위나 그의 위협은 여성의 삶에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평등·발전·평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된다. 성희롱을 포함한 폭력의 공포는 여성동원에 있어서 영원한 제약이며 자원과 기본활동에 대한 여성의 접근을 제약한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높은 사회적, 보건 및 경제적 비용은 여성폭력과 연관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강제적으로 종속적지위

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사회적 구조의 하나이다. 많은 경우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족내 혹은 가정내에서 일어나는데 이때의 폭력은 때로는 묵인된다. 배우자 및 비배우자 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집안내 가족과 기타인물에 의한 여자아동과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강간은 종종 신고가 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러한 폭력이 신고될 때조차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혹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있어서 이를 못하기도 한다.

118.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역사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반영으로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와 차별을 초래했고 여성의 완전한 지위향상을 막아왔던 것이다. 생애주기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근본적으로 문화적 유형 특히 전통적 또는 관습적 습관의 유해한 결과 및 가정, 직장, 지역사회 및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낮은 지위를 영속시키는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와 관련된 모든 극단주의 행위 등에서 초래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가중되는데 이는 특히 여성에 대해 가해져온 행위를 비난하는 체면손상행위가 그러하며 또한 여성의 법률정보, 원조 혹은 보호에 대한 접근의 부족, 여성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의 결여, 기존의 법 개혁 실패와 기존법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고 실행하는데 대한 공공당국측의 부적절한 노력,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표명하는 교육적 및 기타수단의 부재 등이 그러하다. 미디어에서의 여성폭력의 이미지 특히 포르노그래피를 포함한 여성과 소녀를 성적대상으로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강간 또는 성적노예화를 묘사하는 것들은 그러한 폭력을 지속적으로 만연하게 하는 요인이며 일반 지역사회 특히 아동과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한다.

119.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촉진하는 중대한 과제에 대한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방안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실현가능한 것이다. 남녀간의 평등, 동반자의식,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사회화과정의 모든단계에 침투해야 한다. 교육체계는 자기존중, 상호존중, 남녀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

120. 폭력사건에 대한 적절한 성별분리자료와 통계의 부재는 프로그램의 구체화와 변화의 모니터링을 어렵게 만든다. 직장내를 포함한 사적 및 공적부문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과 성희롱, 가정폭력에 관한 부적절한 문서 및 연구의 결여는 특정한 개입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경험은 여성과 남성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극복하는데 동원될 수 있고 또한 효과적인 공적조치가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표명하는데 취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에 반대하여 동원하는 남성단체는 변혁을 위한 필요한 우방이다.

121. 여성은 분쟁 및 비분쟁상황에 있는 권한을 가진 직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조장되는 폭력에 취약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 및 인권법에 종사하는 모든 관리의 훈련과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자의 처벌은 그러한 폭력이 여성이 신임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경찰, 간수, 보안인력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손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22. 여성과 소녀의 성거래를 위한 인신매매에 대한 효과적인 제압은 긴급한 국제적 관심사안의 문제이다. 1949년 인신매매 및 매춘착취금지협약20/과 기타관련문서들의 이행을 점검해야하고 그를 강화해야 한다. 국제매춘과 인신매매 연락망에서의 여성을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 조직범죄의 중대한 초점이 되었다. 이러한 행위를 여성과 소녀의 인권침해와 기본적 자유의 침해의 추가적원인으로 분석했던 인권위원회의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그녀의 위임권한내에서 긴급사안으로서 성거래를 목적으로 한 국제적 인신매매의 문제와 강제매춘, 강간, 성적학대와 섹스관광문제를 표명하도록 요청된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희생자인 여성과 소녀는 원치않는 임신, HIV/AIDS 감염을 포함한 성병감염뿐만 아니라 폭력에의 증대하는 위험에 놓여있다.

123.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언급할 때, 정부와 기타 주체들은 결정이 취해지기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 관점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략목표 D.1.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통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향후활동

124. 정부:

(a)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이를 철폐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관습, 전통 또는 종교적 이유를 들어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

(b) 여성에 대한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 조사활동을 이행하고 또한 이들행위가 국가 또는 개인에 의해 조장되었든 간에 국가법률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c) 가정, 작업장,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을 당하기 쉬운 여성과 소

녀에게 초래된 잘못을 처벌하고 보상하기 위해 국내법상의 형사, 민사, 노동 및 행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하거나 강화한다.

(d)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는데 있어서 폭력예방 및 가해자의 처벌을 강조하면서 그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을 채택 또는 그리고 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다. 폭력을 당하기쉬운 여성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보상, 배상, 치료 등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 및 가해자의 재활 등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한다.

(e) 세계인권선언21/,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3/, 고문 및 기타 잔혹, 비인간적 또는 모멸적 대우 또는 처벌에 대한 협약22/ 등에 담겨진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폭력에 관련하는 국제인권 규범과 문서들을 비준하거나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f)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제11차회의에서 채택된 일반권고 19를 고려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한다23/.

(g) 여성폭력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사업에 성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여성폭력의 원인, 결과와 체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대시킬 목적으로 한 조치와 사업을 이들 정책을 이행하는 책임자들 즉 법실행관리, 경찰, 사법, 의료 및 사회복지사 및 소수그룹, 이주민, 난민문제 담당자 등에게 적극적으로 권장, 지원, 실행하고 또한 폭력여성 피해자들의 재희생이 성을 고려하지 않는 법 또는 사법적 또는 시행상의 관습으로 인해 일어나지 않도록 전략을 개발한다.

(h) 폭력을 당하기 쉬운 여성에게 정의체계에 대한 접근기회와 국내법률로 규정된 대로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정의롭고 효율적인 처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체계를 통해 구제를 찾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i)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와 관습 즉 여성생식기 절단, 여영아살해, 태아 성감별, 지참금 관련 폭력 등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와 관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그러한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비정부 및 지역사회단체의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j)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k)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유형을 수정하고 또한 일방의 성이 다른 성에 대한 열등성 혹은 우월성을 가진다는 관념과 남녀간의 정형화된 역할에 기반한 편견, 관행, 기타의 모든 관습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특히 교육분야에서 채택한다.

(l) 여성폭력행위가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분위기에서 처벌 혹은 보복의 두려움이 없이 여성과 소녀가 신고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고안하거나 이를 강화한다.

(m) 장애여성에게 여성에 대한 폭력부문의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을 도모한다.

(n) 사법·법률·의료·사회·교육 및 경찰과 이민 요원 등 이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끄는 힘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서 또한 여성희생자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에 기반한 행위와 폭력의 위협의 성격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적절한 곳에서는 개선하거나 발전시킨다.

(o) 임무수행중에 여성폭력행위에 개입하고 있는 경찰, 보안인력 또는 기타 관련주체를 처벌하는 현행법을 채택, 필요하면 이를 강화하고, 그러한 폭력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기존법률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p) 모든 적절한 차원에서 행동계획이행을 위한 자원을 포함하여 여성폭력 철폐와 관련한 활동을 위하여 정부예산에 적절한 자원을 할당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한다.

(q) 유엔 인권관련 문서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에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정보 및 철폐에 관한 유엔 선언문을 이행하는데 취해진 조치를 포함한다.

(r)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녀와 협력하면서 또한 그를 지원하고,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성폭력과 관련하여 고문에 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 즉결, 사법관할외 및 임시 처벌에 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등과 같은 기타 적절한 기제와도 협력한다.

(s) 성폭력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1997년에 종료될 때 그 임무를 갱신하도록 인권위원회에 권고하고 또한 그것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를 갱신하고 강화한다.

125.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문, 특히 기

업, 미디어 등:

(a) 의료, 심리 및 기타 상담 서비스 뿐만 아니라 무료 또는 저가 법률원조와 같이 폭력을 당하기 쉬운 소녀와 여성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는 쉼터와 구제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그들이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지원도 제공한다.

(b) 성에 기반한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여성 및 소녀들에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가능한 서비스를 확립한다.

(c) 받아들이는 국가에서의 법적지위가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에게 달려있는 여성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한다.

(d)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또한 그 철폐에 기여하기 위한 전세계의 여성단체와 비정부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지원한다.

(e) 여성의 인권향유에 대한 침해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지역사회단위의 교육과 훈련 캠페인을 조직, 지원, 재정지원하고, 갈등해결에 있어서 지역사회로 하여금 적절한 성인지적, 전통적 및 혁신적 방법을 동원한다.

(f) 학대와 관련된 정보 및 교육분야에서 일차보건의료, 가족계획센터, 기존의 학교보건서비스, 모자보호서비스, 이주가족센터 등과 같은 중간기구의 근본적 역할을 인식, 지원, 촉진한다.

(g) 소년과 소녀 및 남성과 여성으로 하여금 가족, 지역사회 및 사회에서의 폭력의 개인적 사회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한 정보캠페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재정지원한다;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를 가르치고, 폭력에 대해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훈련을 촉진한다.

(h) 폭력의 희생자인 여성과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에 관한 정보를 확산한다.

(i) 폭력가해자를 위한 상담 및 재활프로그램을 제공, 재정지원하고 장려하고 또한 그러한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상담 및 재활에 관한 노력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j) 폭력을 조장하는 미디어표현의 패턴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남녀간의 비정형화된 이미지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미디어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또한 미디어내용에

책임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표현의 자유에 일치하는 전문적지침과 행동규범을 확립하도록 장려하고, 또한 미디어의 여성폭력의 원인과 효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또한 폭력문제에 대한 공공토론을 자극하는데 있어서의 미디어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의식을 높인다.

126. 정부, 고용자, 노동조합, 지역사회 및 청소년단체와 비정부기구 등 적절하게:

(a) 모든 교육기관, 작업장 및 기타장소에서 성희롱 및 기타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를 개발한다.

(b) 여성의 인권에 대한 범죄와 침해를 구성하는 여성폭력행위에 대한 의식을 교육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절차를 개발한다.

(c) 학대관계 특히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 또는 기관에서 살고있는 자들이었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 연루되어 있는 소녀, 청소년 및 젊은 여성들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d) 특히 젊은 여성, 난민, 국내 난민여성, 장애자여성과 여성이주노동자들과 같은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자들 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내고 받는 양국가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현행법률을 시행하고 적절한 곳에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127. 유엔사무총장:

여성폭력에 관한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에게 모든 위임된 기능수행 특히 임무수행 및 후속조치를 취하는데 요구되는 인력 및 자원 등의 모든 필요한 지원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모든 조약기구와의 정기적 협의를 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128. 정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난민여성보호에 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 지침 및 난민에 대한 성폭력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유엔고등난민판무관 지침의 배포와 이행을 권장한다.

전략목표 D.2.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조치의 효과적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향후활동

129. 정부, 지역기구, 유엔, 기타 국제기구, 연구기관, 여성 및 청소년단체 및 비정부기구 등 적절하게:

(a) 특히 다른 형태의 여성폭력의 만연에 관련한 가정내폭력에 관한 연구추진, 자료수집, 통계를 작성하고, 여성폭력의 원인, 성격, 심각성 및 그 결과와 여성폭력을 예방 및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의 효과성 등에 관한 연구를 장려한다.

(b) 조사연구의 결과를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c) 여성과 여자 어린이에 대한 강간 등의 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지원 및 주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보와 통계를 일반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한다.

(d) 미디어로 하여금 성에 기반한 폭력 및 불평등을 조장하는 상업광고에 의해 자행되는 것을 포함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과 그러한 것이 생애주기에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검토하게 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전략목표 D.3. 여성의 인신매매를 철폐하고 매춘, 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희생자를 지원한다.

향후활동

130. 본국, 일시체류국, 목적지 국가의 각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 등 적절하게:

(a) 인신매매와 노예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및 시행을 고려한다.

(b) 여성의 인신매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여성과 소녀의 매춘 및 다른 형태의 상업적 성을 위한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강제노동 등을 부추기는 외형적요인 등을 포함한 근본적 요인을 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에는 형사 및 민법조치를 통하여 여성

과 소녀의 권리에 대한 보다 나은 보호와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기존법을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c) 인신매매의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해 모든 관련법 시행당국과 기관에 의한 협력과 응집된 행동을 강화한다.

(d) 직업훈련, 법적지원 및 공인된 보건의료 등을 통해서 인신매매 희생자를 치료하고 사회로 재활하도록 고안된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을 배분하고, 인신매매 희생자의 사회적 의료 및 심리적 치료를 위해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조치를 취한다.

(e) 젊은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섹스관광 및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과 정책의 개발과 또한 법률의 시행을 고려한다.

E. 여성과 무력분쟁

131. 유엔헌장에 규정된 대로 영토통합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비협박 또는 무력사용금지 및 주권존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환경은 여성의 지위향상에 중요한 요인이다. 평화는 남녀간의 평등 및 발전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력 및 기타형태의 분쟁, 테러행위 및 인질억류 등은 세계 여러지역에서 존재한다. 침략, 외국인 점령, 인종 및 기타형태의 분쟁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남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의 완전한 향수에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침해와 상황은 세계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해와 장애들에는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처벌, 즉결 및 임의 처형, 실종, 임의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점령 및 외국인 통치, 외세혐오, 빈곤, 기아 및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거부, 종교적 배타주의, 테러행위, 여성에 대한 차별, 법규칙의 결여 등을 포함한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국제인도주의법은 때로는 체계적으로 간과되고 인권은 무력분쟁상황과 관련하여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종종 침해받는다. 무력분쟁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의 침해는 국제인권과 인도주의법의 기본원칙의 침해이다. 인권의 방대한 침해는 전쟁과 그 결과의 전략으로서 특히 집단학살, 인종청소의 형태로서 전쟁상황에서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강간을 포함한 강간은 피난민과 난민의 대이동을 일으키면서 강력히 규탄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무력분쟁의 어떠한 상황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지배 또는 식민지화

와 국가와 군사적 억압을 통하여 그 식민지의 영속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32. 1949년의 전쟁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977년의 추가의정서24/는 여성이 그들의 명예에 대한 어떠한 공격 특히 모욕 및 비인격적 대우, 강간, 강제매춘 또는 다른 형태의 비인간적 폭력에 대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한 비엔나선언 및 행동프로그램은 '무력분쟁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침해는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침해이다' 라고 언급한다25/.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적노예화 및 강제 임신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종류의 모든 침해는 특히 효과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인권의 완전한 향수에 심각한 장애를 구성하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침해와 상황은 세계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침해와 장애들에는 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대우 또는 처벌, 즉결 및 임의 처형, 실종, 임의감금,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외국인점령 및 외국인 통치, 외세혐오, 빈곤, 기아 및 다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거부, 종교적 배타주의, 테러행위, 여성에 대한 차별, 법규칙의 결여 등을 포함한다.

133. 무력분쟁 및 무력점령상황에서 인권침해는 국제인권문서와 1949년의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에 명시된 대로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적 법의 기본원칙의 침해이다. 전쟁으로 황폐화하고 점령된 지역에서 방대한 인권침해와 인종청소정책이 계속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그중에서도 국제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과 기타 난민들과 국내난민들, 그 대다수가 여성, 청소녀 및 아동들의 거대한 유동을 만들어냈다. 거의가 여성과 아동인 민간인 희생자는 때로는 전투병 사상자보다도 훨씬 많다. 게다가 여성은 때로는 부상당한 전투병을 위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분쟁의 결과로 그들자신이 예기치 않게 세대의 유일한 관리자, 편모, 노인 친척을 돌보는 이로 전락하게 된다.

134. 지속적인 불안정과 폭력의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방안의 실시가 긴급히 요구된다. 권력구조에의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완전한 참여와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에의 여성의 완전한 개입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와 촉진에 필수적이다. 여성이 분쟁해결, 평화유지 및 보호와 외무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책결정직위에 참여가 저조하다. 여성이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평등한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경제적으로 세력을 결집해야 하고 모든 차원의 정책결정에서 적절히 대표해야 한다.

135. 전체지역사회가 무력분쟁과 테러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한편, 여성과 소녀들은 사회에서의 지위와 그들의 성으로 인해 특히 영향을 받는다. 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여성을 면책으로 강간하기도 하며 때로는 조직적인 강간을 전쟁과 테러행위의 전술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폭력과 여성인권침해의 영향은 모든 연령의 여성이 경험한

다. 이들은 주택과 재산의 손실, 가까운 친척의 비자발적 실종, 빈곤과 가족별거와 해체 등을 겪고 또한 이들은 특히 인종청소정책 및 기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의 결과로서 무장분쟁 상황에서의 살인행위, 테러행위, 고문, 실종, 성적노예제, 강간, 성적학대 및 강제임신 등의 피해자들이다. 이것은 전생애에 걸쳐 무력분쟁, 외국인침략 및 외국인통치의 사회·경제·심리적 장애결과로 나타난다.

136. 여성과 아동은 국내난민을 포함하여 전세계의 수백만 난민과 기타 난민의 80%를 차지한다. 이들은 재산, 물건과 서비스의 박탈과 그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권리의 박탈 그리고 폭력과 불안정 등의 위협에 놓여 있다. 테러행위와 위협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할 때와 그리고 특정민족, 문화적 또는 종교집단 멤버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들의 고향을 떠나게 하는데 있어서 박해의 수단으로 사용된 쫓겨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 특별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성폭력을 통한 박해 또는 다른 성관련 박해를 포함하여,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명시된 이유로 근거가 확실한 학대에 대한 공포의 결과로서 여성은 강제적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며 또한 이들은 탈출중에 그리고 피난처 및 재정주국가에서 그리고 송환중이거나 송환후에 폭력과 착취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은 몇몇 피난처국가에서는 어떠한 소송이 그러한 박해에 근거할 때 난민으로 인정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137. 대부분의 경우 피난민, 난민 및 이주민 여성들은 힘, 인내, 풍부한 자원력을 보여주고 재정주국가 또는 그들이 귀환할 때 본국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절히 관여할 필요가 있다.

138. 많은 여성비정부기구는 전세계적으로 무기의 국제통상, 암거래 및 확산뿐만 아니라 군비에서의 감축을 요청해왔다. 분쟁과 과도한 군비에 의해 가장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들은 기초서비스에의 투자부족으로 인해 박탈되어 빈곤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특히 농촌여성들인 이들 빈곤여성들은 또한 특히 해를 입히고 무차별한 결과를 낳는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전세계적으로 64개국에 1억개 이상의 대인살상용 지뢰가 산재해 있다. 과도한 군비 개발, 무기통상과 무기생산과 구입에 대한 투자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표명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가안보와 평화의 유지는 경제성장 및 여성의 힘의 증진에 중요한 요인이다.

139. 무력분쟁 및 공동사회가 붕괴하는 기간중에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들은 무력 및 기타분쟁가운데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기도 한다. 여성은 그들의 가족과 사회에서 평화교육자로서 중요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공헌을 한다.

140.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정의와 관용을 옹호하는 평화의 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며 초기에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는 분쟁해결, 중재, 편견의 감소와 다양성의 존중 등에 대한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41. 무력 및 기타분쟁을 표명할 때 결정이 취해지기 전에 남성과 여성 각자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성관점을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촉진되어야 한다.

전략목표 E.1. 의사결정차원에서 분쟁해결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고 무력 및 기타 분쟁상황 또는 외국인 점령하에서 살고 있는 여성을 보호한다.

향후활동

142. 정부, 국제 및 지역의 정부간기구:

(a) 유엔헌장 101조에 의거하여 균등한 지리적 배분을 적절히 고려하여 유엔사무국을 포함하여 모든 차원의 모든 포럼과 평화활동에 특히 의사결정차원에서 여성의 평등한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도모하는 조치를 취한다.

(b) 무력 또는 기타분쟁 그리고 외국인점령의 해결에서 성관점을 통합하고 평화적 분쟁해결에 관한 기타기구뿐만 아니라 전유고 및 르완다를 위한 유엔국제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모든 관련국제기구에서의 사법 및 기타직위에 지원자를 임명하거나 지원할 때 성의 균형을 목표로 한다.

(c) 무력분쟁상황에서의 강간, 강제임신, 모욕적 폭력에 관한 사건과 테러행위를 포함하여 무력분쟁에서 여성에 대한 다른 형태의 폭력 등에 관한 사건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검사와 판사, 기타 공무원에게 적절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구들이 성문제를 적절히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성 관점을 이들의 업무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